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 영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미 FTA 전후 양국 섬유
교역의 패턴 변화 분석



2018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통 상 물 류 학 과

박 수 연

경 영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미 FTA 전후 양국 섬유 교역의 패턴 변화 분석

지도교수 조 찬 혁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통 상 물 류 학 과

박 수 연

박수연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8월 24일



위 원 장 지리학박사 이 정 윤 (인)

위 원 경제학박사 김 철 수 (인)

위 원 경영학박사 조 찬 혁 (인)

목 차

표 목차	iii
그림 목차	iv
Abstract	v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범위와 구성	7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9
1.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9
2. 원산지 결정 기준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16
가. 세번 변경 기준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CTC)	17
나. 부가가치 기준 (Value Added Criterion)	19
다. 가공 공정 기준	20
라. 보충 기준	21
3. 원산지 결정 기준의 엄격성	22
4. 한미 FTA 섬유 원산지 결정 기준	25
III. 우리나라 섬유 산업의 현황	33
1. 섬유산업의 구조 및 현황	33
2. 섬유류 수출입 통계	37

IV. 실증분석	44
1. 연구 방법	44
2. 실증분석 결과	46
가. 한미 FTA 전후 1년 섬유 교역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동일품목)	46
나. 한미 FTA 전후 3년 섬유 교역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동일 품목)	50
다. 섬유류 품목 분류 결과	53
라. 섬유류 총계 분석 결과	61
마. 추가 분석 결과 - 기준 세율	65
바. 추가 분석 결과 - 양허 유형	69
V. 결론	72
1. 실증분석 결과의 요약	72
2. 연구의 시사점	75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77
참고문헌	79

[표 목차]

<표 1> 원산지 결정 기준의 구성	16
<표 2> Estevadeordal 의 엄격성 지수	23
<표 3> 섬유산업 동향	36
<표 4> 섬유류 수출입 실적	37
<표 5> 국가별 섬유류 수출 실적	38
<표 6> 국가별 섬유류 수입 실적	39
<표 7> 세계 섬유·의류 수출	40
<표 8> 세계 섬유·의류 수입	41
<표 9> 미국 섬유류 수출입 실적	42
<표 10>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수출 품목)	48
<표 11>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수입 품목)	49
<표 12>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수출 품목)	51
<표 13>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수입 품목)	52
<표 14>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동일 품목 분류	54
<표 15>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수출 예외 품목 분류	55
<표 16>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수입 예외 품목 분류	56
<표 17>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동일 품목 분류	57
<표 18>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수출 예외 품목 분류	59
<표 19>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수입 예외 품목 분류	60

<표 20>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동일 품목 총계	61
<표 21>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예외 품목 총계	62
<표 22>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동일 수출 품목 총계	62
<표 23>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동일 수입 품목 총계	63
<표 24>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예외 수출 품목 총계	63
<표 25>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예외 수입 품목 총계	64
<표 26>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의 기준 세율	65
<표 27>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의 기준 세율	66
<표 28>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예외 품목의 기준 세율	67
<표 29>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예외 수출 품목의 기준 세율	67
<표 30>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예외 수입 품목의 기준 세율	68
<표 31>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3년의 동일 품목 양허 유형	69
<표 32>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예외 품목의 양허 유형	70
<표 33>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예외 수출 품목의 양허 유형	71
<표 34>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예외 수입 품목의 양허 유형	71

[그림 목차]

<그림 1> 섬유·의류 제조 공정별 원산지 인정 방식	25
<그림 2> 섬유 산업의 생산 공정 흐름도	34
<그림 3> 섬유산업의 스트림 단계 및 섬유 재료의 유형에 의한 HS 품목 분류	53

Analysis of Pattern Changes in Textile Trade Due To the KORUS FTA

Soo Yeon Pak

*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t the tim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US FTA, textiles have been expected to enjoy considerable benefits, including automobiles and their parts, and electric and electronic products, which are the major export items to the US. The textile industry was one of the industries that was classified as a comparative advantage item. When the Korea-US FTA came into effect, it was predicted that Korea's textile industry would become competitive due to the elimination of tariffs and tariff cuts, which would boost exports to the US. It was believed that the Korea-US FTA would bring trade surplus to Korea's textile trade.

However, actual results show different results. Unlike the expectation that it will be the biggest beneficiary of the Korea-US FTA through increased textile exports, Korea's textile exports showed only modest export growth.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Korea-US FTA on textile trade in Korea. To analyze the changes in textile trade due to the effect of the Korea-US FTA, I used the data that minimizing the effects of other variables other than the Korea-US FTA. That's the reason why I used

the textile trade data up to 3 years before and after the Korea-US FTA. In addition, I classified the items of textile trade data for understand the trade status of each product.

The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no change in the textile trade after the Korea-US FTA.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overall trade volume. However, after the Korea-US FTA came into effect, it was confirmed that the textile items were diversified. Immediately after the FTA took effect, exports increased until 2013, but then dropped again, showing the same level of trade as before. It is confirmed that apparel and fabric are active in textile trade, and the import of yarn has increased after the Korea-US FTA. This seems to be due to the fulfillment of Yarn-Forward Rule, which i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origin of fibers in the Korea-US FTA.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자유무역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 체결 절차규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FTA 체결 정책을 펼쳤다.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였으며 2007년 4월 한미 FTA 협정이 타결되었다. 협정 서명을 거쳐 비준 동의안 및 부수 법안이 양국의 국회를 통과하였고 마침내 2012년 3월 15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한미 FTA로 양국은 전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고, 민감 품목에는 장기 관세, 비선형 관세 철폐 등을 도입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였다.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은 1960년대 초 경제 개발 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내수 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1970년대 말, 수출 전략 산업화 단계에 도달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업종별, 품목별 생산 구조의 고도화가 촉진되었다. 1990년대 섬유 산업은 임금, 기술 수준, 공급 과잉에 따른 과다 경쟁의 내적 요인과 후발 개도국들의 추격, 세계 경제의 블록화 현상 등의 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2000년대로 들어서는 섬유 쿼터 폐지와 FTA 체결 등으로 대외 경쟁력을 중요시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업종이 정보화 및 정보 공유가 업 스트림(Upstream)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인 역량이 미약하였다. 또한, 노동 인력의 부족, 국내 임금의 상승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중국, 인도 등 후발

개도국의 거센 추격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박길상, 2005). 그러나 2010년대로 넘어 오면서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형성하였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세계의 섬유 산업은 의류용과 산업용으로 나누어지고, 중·저가 의류용 섬유는 후발개도국이, 고가 의류용 섬유와 산업용 섬유는 미국을 선두로 한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은 상호 관련성을 가지는 세 단계의 스트림(Stream) 구조이다. 업 스트림(Up Stream)은 대기업 위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원사, 직물 및 편직물을 생산한다. 중소기업 위주의 원사, 제직 업계에서 생산된 직물 및 각종 원자재를 의류 및 패션 제품으로 제조하고 가공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미들 스트림(Middle Stream)이 있다. 다운 스트림(Down Stream)에서는 의류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획과 유통, 물류를 담당한다(김창봉, 2008).

FTA가 발효되면서 협정 당사국이 겪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인하, 철폐되어 역외국 상품에 비해 협정 당사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세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역외국 상품이 협정 당사국 물품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를 없애기 위해서 원산지 판정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서 기대하는 가장 큰 효과는 특혜 관세 적용에 따른 수출 증가와 무역 창출 효과에 있다. 하지만 원산지 규정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나타나면 무역 창출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용근·안창달, 2011).

한미 FTA 발효 당시 섬유류는 우리나라의 수출 주 품목인 자동차와 그 부품, 전기·전자 등과 함께 상당한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섬유류의 FTA 활용률은 수출의 경우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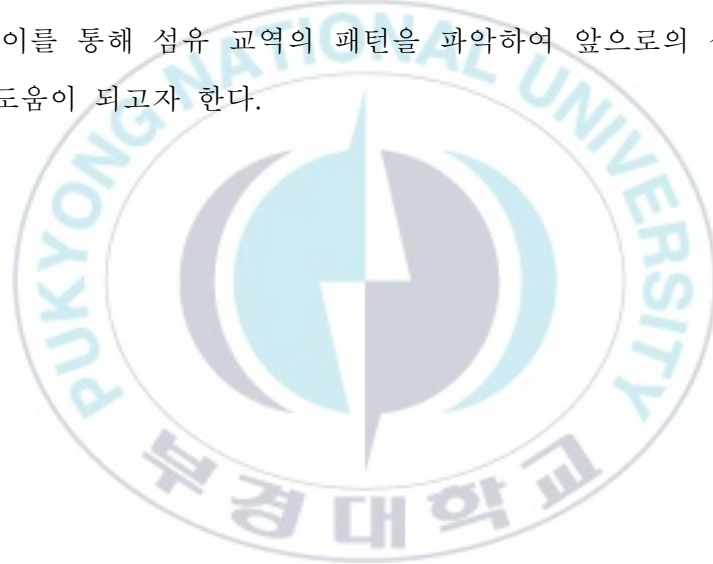
(누적) 72.4%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미국 수출에서 FTA 활용률이 86.1%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FTA 활용률이 높으면 수출 금액도 이에 비례하여 높을 것이라 예상 되지만, 높은 FTA 활용률이 반드시 수혜 품목의 수출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전체 섬유류 수출에서 특정 품목군의 경우 오히려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53류에 해당되는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의 경우 높은 활용률과는 반대되는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한미 FTA에서 섬유류에 적용하고 있는 까다로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제품의 원가 상승, 미미한 원산지 예외 물량 확보, 섬유류 생산 기업 연례 정보 제공 및 원산지 사후 검증 강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섬유류 수출이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섬유류 품목의 높은 FTA 활용률에도 불구하고, 전체 품목의 2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8.0%에 한참 못 미치는 1.7%의 증가율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통하여 알 수 있다(이석동·이춘수, 2015).

섬유산업은 대미 비교 우위 품목으로 분류되던 산업 중 하나였다. FTA를 통해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여 그에 따른 수출 증대와 차별화 제품 생산으로 우리나라 섬유 산업이 재도약할 기회로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한미 FTA가 발효 되면 관세 인하 및 관세 철폐로 인해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이 중국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어 미국 수출에 탄력을 받아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한미 FTA가 수출 흑자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으나, 실제 교역량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협상 당시의 섬유 수출 증가를 통한 한미 FTA 최대 수혜 산업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우리나라의 섬유류 수출에 있어 한미 FTA 효과는 미미한 수출 증가율만 보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섬유류 교역에서 한미 FTA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미 FTA 발효 전후의 섬유 교역량을 분석하여 한미 FTA가 실제로 우리나라 섬유 산업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어떤 부정적인 영향 혹은 협상 당시의 전망과 예상외의 결과를 보였는지 파악한다. 한미 FTA가 전체적인 섬유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섬유 교역의 패턴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섬유 교역에 실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한미 FTA 체결은 정채되어 있던 우리나라 섬유류 수출에 호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 이후의 수출 금액 혹은 수출 중량은 협상 당시 예상했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석동·이춘수(2015)는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의 교역성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미미하다고 하였으며, 한미 FTA를 적용받는 우리나라의 섬유류 제품은 FTA 수혜 품목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미 FTA에서 적용하고 있는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미국이 NAFTA부터 시작하여 FTA를 체결할 때마다 적용하였던 원사 기준(Yarn-Forward Rule)이다. 원사 기준은 섬유류의 원사, 즉, 실에서부터 완성된 상품에 이르기 까지 생산하는데 들어간 모든 재료들이 역내산 이어야 한다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다. 이 때문인지 한미 FTA 섬유류 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원산지 결정 기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혹은 원산지 결정 기준 연구, 섬유 산업에서 한미 FTA를 적용 받기 위한 대응방안의 연구가 많았다. 한미 FTA가 발효되고 5년이 지난 현재, 실제 섬유류의 교역 분석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문헌 연구들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한미 FT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 섬유 교역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수출입 금액이 늘었는지, 수출입 품목의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동안의 섬유류 교역을 분석하면 수출, 수입 중 어느 쪽의 품목이 증가 혹은 감소하였는지 찾는다. 교역이 많이 이루어진 품목은 섬유류의 섬유, 원사, 직물, 의류의 커다란 분류 안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분석한다.

둘째,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동안의 섬유류 교역은 발효 전후 1년 동

안의 섬유 교역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과 3년 동안의 섬유류 교역 분석을 통해 섬유류의 어떤 품목에서 수출, 수입이 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섬유 교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한미 FTA 전후 섬유 교역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한미 FTA 뿐 아니라 다른 FTA와의 교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분석을 통해 나타난 변화를 세계 섬유 교역에서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섬유 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미 FTA 발효 전후 섬유류 품목의 기준 세율과 양허 유형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섬유 산업의 어떤 품목이 주로 수출·수입 되고 있는지 보다 정확히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으로의 섬유 교역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3. 연구범위와 구성

본 연구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 섬유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을 기준으로 섬유 교역의 패턴 변화를 분석하였다. 섬유류 교역에서 한미 FTA 이외의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간의 데이터와 전후 3년간의 섬유 교역 데이터만을 사용하였으며, 한미 FTA 발효 년도인 2012년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한미 FTA 전후의 섬유 교역 데이터를 독립 표본 t 검정으로 먼저 분석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FTA 발효 이후 가장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전후 1년간의 데이터와 나아가 발효 전(2009-2011)과 발효 후(2013-2015) 3년 동안의 섬유류 교역을 각각 독립 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한미 FTA 발효 전후에 동일하게 교역이 발생한 품목만을 포함시켰다. 또한 섬유류 품목별 데이터에서 수출 금액, 수입 금액이 0으로 표시되었던 품목을 제외시켰다. 그 해에 실제로 교역이 되었던 품목들을 구분하여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으로 나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는 관세청 무역통계의 품목별 국가별 실적 자료를 사용했으며,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는 섬유류 HS CODE 6단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에는 기간, 품목명, 품목코드, 국가명, 수출 중량, 수입 중량, 수출 금액, 수입 금액, 무역 수지가 나타나있다. 자료의 단위는 금액의 경우 천 달러(USD 1,000), 중량의 경우 톤(TON) 단위로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의 범위와 구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정리했다. 한미 FTA 의 원산지 결정 기준과 섬유류의 복잡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서술하였다.

제 3장에서는 우리나라 섬유 산업의 현황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섬유 산업의 구조 및 현황을 통해 전반적인 우리나라 섬유 산업을 알아보고, 섬유류 수출입 통계를 통해서 교역 실태를 파악하였다.

제 4장에서는 자료의 수집 방법과 본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 연구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추가 분석 결과 등 실증 분석 결과도 제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다. 실증 분석 결과를 정리·요약하고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Ⅱ. 이론적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FTA 관세 특례법에서는 원산지를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1973년 교토협약 (Kyoto Convention)에서는 원산지를 “상품의 원산지 (Country of Origin of goods)는 관세율 표, 수량 제한, 기타 무역에 관한 조치의 적용을 위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품을 생산 혹은 제조하는 국가”라고 정의 내렸다. 여기서의 ‘국가’는 국가집단 (a group of countries), 한 국가의 지역 혹은 일부(a region or a part of a country)를 포함시킬 수 있다. 하나의 상품이 생산되었다고 간주되는 국가와 함께 그 상품을 연계시키는 지리적 관련성을 의미한다. 즉, 원산지란 그 상품이 생산된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채형복·황해륙, 2008; APalmer, 1987; Inama, 2009; Krishna, 2005; Krishna and Krueger, 1995; Manchin and Pelkmans-Balaoing, 2007; Vermulst, 1992).

상품의 ‘생산, 가공, 제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상품이 지니는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식물의 경우 성장(Growth), 사육(Breeding), 재배(growing), 획득(acquisition), 수확(harvest) 등이 있으며 광물의 경우 채굴(exploitation), 채집(Collection)이 포함될 것이다. 이 외에도 각 상품별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에 해당하는 제조(Manufacture), 가공(Processing) 등 여타 모든 행동들이 ‘생산 혹은 제조하는’에 해당되는 것이다(Cadot and Suwa-Eisenmann, 2005; James, 2006; Flatters, 2002;

Hirsch, 2002). 일반적으로 동식물 등 자연에서 나고 자란 완전상품은 원산지 결정에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공산품을 포함한 그 외의 다른 생산품은 완성되기 까지 걸리는 과정이 복잡하고 하나의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에서 제조하고 또 가공을 걸쳐 완성된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산지를 쉽게 결정할 수가 없다(이명구·정재완·정재호, 2016).

원산지에서의 국가 영역에 대해서 GATT 제24조(적용영역, 국경무역,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 지역) 2항에서는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관세영역은 해당영역과 기타 영역간의 무역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독립관세 또는 기타 통상규칙을 유지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양해한다.” 고 설명 하였다. 즉, 원산지에서의 국가는 정치적 실체를 지니고 있는 하나의 국가를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나라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 홍콩이나 마카오 같이 국가가 아닌 특정지역도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이영달·이신규, 2016).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원산지의 개념과 원산지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박현희, 2012; 정재우·이길남, 2011; Brenton and Manchin, 2002; Bilkey and Nes, 1982). 관세 양허와 특혜 관세의 대상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에 한정되기 때문에 완성된 상품의 원산지는 FTA 협정 당사국 간의 협정 기준에 적합해야만 한다. 또한 원산지는 역외국 상품과 역내국 상품을 정확하게 나누어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과 투자를 증대시키고 나아가 양국의 무역 발전에 기여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강준하, 2008; 이영달·이신규, 2016).

원산지 규정이 처음 언급된 것은 1883년 파리에서 체결된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 협정’이다. 파리 협약 제10조에서 “원산지 또는 생산자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한 수입품은 압류 된다.” 라고 명시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파리 협정 이후부터 국제 무역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외에도 1947년 제정된 GATT를 비롯해서 1973년 관세 행정의 국제적 표준화와 세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제정된 교토 협약과 1999년의 개정 교토 협약에서 꾸준한 언급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강제적인 규정을 만들지 못하였다(Estevadeordal and Suominen, 2009).

1995년에 출범한 WTO에서 원산지 규정의 협약(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이 있었으나 이마저도 비특혜 원산지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지금과 같은 원산지 규정은 국제 무역 사회에서 FTA 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무역 협정의 출현과 함께 나타났다. 협정 당사국의 이해 관계를 고려한 특혜 원산지 규정이 나타났다.

원산지 규정은 특혜 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이라는 두 개의 큰 틀로 구분된다. 특혜 원산지 규정은 최빈 개도국 및 개도국에게 일방적인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일반 특혜 관세 제도(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관세동맹(CU : Custom Union) 등 특정 국가에 한하여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데 적용되는 규정이다(강문성, 2015).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특혜 원산지 규정과는 반대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반덤핑과 수입 상품의 원산지 표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WTO의 비차별(Non-Discrimination) 원칙에 부합하여 적용되며 다른 무역상의 상품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보는 이유는 특혜 원산지 규정은 협정 양 당사국 간의 배타적인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무역 정책을 실현하는 수많은 절차 중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이명구·정재완·정

재호, 2016).

원산지 규정은 관세 양허와 함께 가장 중요한 협상으로 꼽히고 있다. 강준하(2008)는 원산지 규정의 특징으로 세 가지로 설명하고 그 중요도를 나타냈다. 첫째, 원산지 규정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산업에 대한 생산 형태와 산업 구조에 관련된 정책적 판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국내 산업 보호와 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원산지 규정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원산지 규정에 협정 당사국의 부품을 일정한 양만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렇다면 이 상품이 완성되는데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부품을 만드는 국내의 업계에 이러한 조건은 생산 및 투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역외 국가의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서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공장에서 조달하는 부품들이 줄어들어 관련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 그 상품을 생산한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모든 기업이 얽혀서 그 산업의 생산 형태는 물론이고 산업 구조와 교역 구조까지 영향을 미친다.

둘째, FTA 협정을 맺을 상대가 어느 국가인지에 따라 원산지 규정은 달라질 수 있다. 협정 상대국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량과 산업의 분업화, 산업 구조 및 생산 형태, 민감한 산업이 다르다. FTA를 체결할 상대 국가의 무역 특징에 따라 협상 과정에서 각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조정하여 서로에게 가장 이익이 되고 유리한 방향으로 원산지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같이 상이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각국에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 매번 상품별 원산지 결정 기준의 통과 유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동일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FTA 협상 과정에서 많이 노력하여야 한다(Ju and Krishna, 2005).

세 번째, 원산지 규정은 외국 자본 투자 유입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Dutttagupta and Panagariya, 2007).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역내산(협정 당사국) 재료 혹은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전까지 제 3국의 재료 혹은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 과정에 사용하던 것을 FTA 협정이 발효 되는 순간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 부품을 수출해오던 제3국(역외국)에서는 거래 파트너가 사라지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다. 역외국에서는 이제 수출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재료 혹은 부품 관련 공장을 해외에 직접 짓고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외국 자본 투자 유입이 된다.

원산지 규정 협상은 각 품목별 관세철폐 기간을 일반적으로 10년 내외에서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이다. 품목별 관세율 조정과 적합한 기간, 각국의 민감한 산업의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의 여부 및 발동 요건 등 무역자유화 방법을 강구한다. 또한 당연히 FTA 에서의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협정 당사국 양국과의 거래 중에 있는 상품이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FTA가 체결되고 발효된다 하더라도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한 상품의 경우, 사실상 개방이 되지 않은 것과 같다. (류병운, 2006)

나라마다 민감한 산업은 다르겠지만 대체로 섬유·의류 산업과 자동차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FTA 협상에서 엄격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미 FTA에서 미국의 경우 섬유·의류 산업이, 우리나라는 농산물이 해당된다. FTA 협정을 맺고 시장을 개방 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이어도 그 속의 특정 집단은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원산지 규정은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이므로 관세 양허와 함께 가장 중요한 협상이라 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은 특혜 무역 지역에서의 무역 자유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의도한 만큼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상품이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비용과 그 기업의 증명서 발급 업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원산지 규정 관련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부재가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데 있어 예외로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둘째, 무역 창출 효과 외에도 원산지 규정이 가지는 특성 상 무역 전환과 무역 억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이상옥·성남길, 2011; 손용정, 2017).

무역 창출 효과는 FTA 체결로 협정 상대국에서 저비용으로 생산된 수입 상품이 보다 높은 비용으로 생산된 국내 상품을 대체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무역 전환 효과란 상품의 공급원이 보다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역외국의 공급자에서, 보다 높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협정 상대국의 공급자로 전환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협정 당사국의 공급원이 무관세 혹은 특혜 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역외국의 공급원이 저비용으로 생산하여 수출했던 역외국의 공급원을 밀어 내기 때문에 발생한다(손수석, 2012).

FTA 협정국으로 향하는 상품의 수출 비율이 높고, 역내에서 대체 중간재를 조달하기 쉬운 경우에 원산지 규정이 더 무역 제한적으로 된다. 국가의 규모가 작은 경우 중간재를 국내에서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무역 제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 된다. 누적국과 비누적 국가와의 생산비 차이가 크다면 이 또한 포함된다. 이런 요소들을 찾아내고 난 후 무역 제한성을 완화시키는 해결 방안으로는 원산지 규정의 단순화와 엄격성 완화가 있다.

손수석(2012)은 원산지 규정의 단순화와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상이한 원산지 규정들이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스파게티볼 효과는 FTA 체결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의 무역을 상대적으로 더 제한하는 것으로 스파게티볼 효과와 같은 다자적 누적(Multilateral Cumulation)을 위한 대안으로 세 가지가 있다. 원산지 규정에서 부가가치 기준 사용으로의 전환, 유사 누적이 아닌 완전 누적(Full or Total Cumulation) 조항의 도입, 그리고 부가가치 관세(Value-Added Tariff)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위의 세 가지를 적용한다면 여러 국가들이 서로 다른 부가가치 원산지 규정(Value-Added ROOs)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적 조항(완전 누적)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원산지 결정 기준(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원산지 규정의 핵심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Origin Determination Criteria)이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완전 생산 기준(Wholly-Obtained Criterion)과 실질적 변형 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보충기준의 세 갈래로 나뉜다. 완전 생산 기준은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어떤 상품이 한 국가 내에서 완전히 생산되는 경우 그 생산국이 원산지가 되는 조건이다. 공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의 경우 FTA 협정에 따라 구체적인 정의가 조금씩 달라진다. 대부분의 상품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완전 생산 기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표 1>은 원산지 결정 기준의 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원산지 결정 기준의 구성

구분	종류		
일반 기준 (총칙)	기본 원칙	- 완전 생산품 - 불완전 생산품 : 세번 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역내가공 + 충분가공 원칙 - 원산지 재료 생산품 - 직접 운송 원칙	
	분야별 특례	- 누적 기준 - 대체가능물품 - 포장·용기 - 전시 용품	- 최소 기준 - 간접 재료 - 세트 물품 - 중간재 - 부속품·예비품 - 재수입 물품
품목별 기준 (각칙)	공통 기준	- 일반 주 - 부·류·호의 주	
	개별 기준	- 세번 변경 기준 - 조합 기준	- 가공 공정 기준 - 선택 기준 - 부가가치기준

출처 : 이영달·이신규, 2016

모든 상품이 한 국가에서 생산되기는 쉽지 않다.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상품을 가공하여 생산하였을 때, 어느 국가를 원산지로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 경우 필요한 기준이 바로 실질적 변형 기준이다. 상품의 실질적 특성이 어느 국가에서 만들어졌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부분의 제품이 여러 나라를 거쳐 완성되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실질적 변형 기준은 원산지 결정 기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핵심 기준이다. 실질적 변형 기준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으로 구분된다.

원산지 결정 기준 협상을 할 때는 산업 별 상대적 중요도를 먼저 파악하고 맞춤형 원산지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조성장·조찬혁(2016)은 4가지 산업(자동차 산업,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 식품, 전기·전자 산업, 섬유·직물·의류 산업)의 원산지 결정 기준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AHP 분석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각 산업의 어떤 요인들이 원산지 기준을 결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의 민감성이 1위로 나타났다. 원산지 결정 기준 협상에서 가장 먼저 전 산업과 품목에 걸쳐 민감성을 고려해야함을 주장하였다.

가. 세번 변경 기준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CTC)

세번 변경 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CTC)은 가장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며, 상품의 생산자가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입증과 예측가능성이 높다. 세번이 변경되기 전의 상품과 완제품 간의 변경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을 가진다. 저렴한 관리 비용 또한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세번’이란 HS 코드(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말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이다. HS 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라마다 단위를 추가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10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제 3국의 부품으로 어떤 상품을 생산하였을 때 그 부품의 HS 코드와 완성된 상품의 HS 코드가 원산지 결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단위만큼 변경되었다면 원산지로 인정한다.

HS 코드에는 2단위(류 : Chapter), 4단위(호 : Heading), 6단위(소호 : Sub-Heading)가 있다. 2단위 변경 기준(CC : Change of Chapter), 4단위 변경 기준(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6단위 변경 기준(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이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협정마다 모두 다르다. 6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 가장 완화된 기준이며 그 반대인 2단위 기준 변경이 제일 엄격하다. 관세율 표에서 세번은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치더라도 여전히 동일한 세번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새로운 상품의 생산 과정이나 신제품의 개발이 관세율 표의 업데이트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두 가지 상품을 수입할 경우, 하나는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만 다른 상품은 충족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상품에 필요한 모든 중간재가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간재가 완성된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입된 중간재 중 하나만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도 비합리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번 변경 기준은 생산 과정이 복잡한 상품의 경우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 할 수 있다(허윤석·박명섭·박진우, 2017).

나. 부가가치 기준(Value Added Criterion)

부가가치 기준(Value Added Criterion)은 FTA 협정 당사국의 부품이 아닌 제 3국의 부품을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였을 때 생산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국가가 그 상품의 생산 국가로 인정 되는 기준이다. 한미FTA에서는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공제법(BD : Build-Down Method), 집적법(BU : Build-Up Method), 순원가법(NC : Net Cost Method)을 인정하고 있다.

공제법은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제한 금액을 상품가격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45% 이상이어야만 하며, 반대로 말하면 역외 부가 가치의 비율이 55% 미만이어야 한다. 집적법은 원산지 재료 가치를 조정 가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방법은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적용할 수 있다. 순원가법은 한미 FTA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상품 가격이 아닌 순원가(상품 가격에서 판매를 위한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등을 뺀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제하고 순원가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부가가치 기준을 산정하는 여러 방법 중, 협정 제6. 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수출업자 혹은 수입자, 생산자가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역내 부가가치의 최소 비율을 규정하는 것이 부가가치 기준이다. 산업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역내 부가가치 비율에 초점을 맞춰 세번 변경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는 상품들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부가 가치 비율의 기준치(Value-Content Thresholds)는 협상이 가능하다. 지속적인 관세 인하 협상을 통해 관세를 인하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 기준도 협상을 통해 바꿀 수 있다(손수석, 2012).

그러나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산정할 때 필요한 계산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여,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는 기업으로서는 체계적인 회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관리 비용이 든다. 환율의 변동과 원재료 가격에 의해 원산지가 변동될 수가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 자의적인 원가 조작이 가능하여 이로 인한 논란이 발생 할 수도 있다. 이후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있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과 서류 제출의 부담 등 사후 검증에 많은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강준하, 2008; 채형복·황해륙, 2008; 허윤석·박명섭·박진우, 2017).

다. 가공 공정 기준

가공 공정 기준은 주요 공정 기준 혹은 특정 공정 기준 이라고도 한다.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에 규정된 특정 공정을 하거나 특정 부품을 사용하면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즉, 특정 산업의 공정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된다. 기준이 정확하고 생산자가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증명하기 쉽다.

하지만 증빙서류가 복잡하고 원산지 기준 충족으로 인정받는 특정 가공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새로운 상품의 생산 공정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기술적 발전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단계가 많을수록 제한적이다. 또한 세부 공정들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모든 산업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허윤석·박명섭·박진우, 2017).

대표적으로 가공 공정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에는 섬유·의류 제품을 들 수 있다. 섬유류 품목은 세번 변경 기준과 함께 가공 공정 기준을 만족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세번 변경 기준 한 가지만 사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품목은 발견이 쉽지 않다.

한미 FTA에서 협상한 섬유류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른 품목과 비교해 보면 더 복잡하다. 일부 품목에서는 명시된 몇 가지 품목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규정도 있다. 반대로 지정된 품목을 제외한 품목을 사용하고 세번이 변경되었을 때 원산지를 인정하는 품목도 있다. 이 외에도 가공 공정 기준은 화학 제품과 그 관련 품목에서도 나타난다(강준하, 2008; 채형복·황해륙, 2008).

라. 보충 기준

위에서 언급한 원산지 결정 기준 만으로 원산지를 결정하기에 조건이 충족 되지 않거나, 상품에서 역외산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여 그 재료로 인해 원산지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할 때, 혹은 세트 상품 등의 경우를 위해서 보충기준이 존재한다. 보충 기준에는 미소기준(De Minimis) 또는 최소 허용 기준(Tolerance Rule), 누적 기준(Accumulation or cumulation), 롤업(Roll-Up) 또는 흡수 조항(Absorption), 중간재(Neutral Elements), 대체가능 물품 및 재료(Fungible Goods), 상품의 세트, 소매 판매용 포장 재료 및 용기,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 부속품 및 예비품과 공구, 간접 재료, 재수입 물품, 전시 용품이 있다.

3.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

FTA는 역외 생산품과의 차별화를 목적으로 체결국 간의 교역 상품에는 FTA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 관세를 적용한다(Brenton, 2003; Krueger, 2012). 이 때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특혜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관세의 인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 같은 특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FTA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김세영·조국형, 2012).

원산지 기준은 관세 양허와 함께 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이다. 하지만 FTA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 관세의 폭과 양허 기간이 길어도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게 되어 있으면 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줄어든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역의 증진이라는 FTA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렵게 된다(Erasmus and Kirk, 2006; Medalla and Balboa, 2009). 그러므로 적당한 수준에서 원산지의 엄격성이 결정될 때 자국의(역내의) 산업도 보호하고, 역외 국가로부터의 투자 확대 등 경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게 제정되었을 경우에는 무역 전환 효과로 인하여 원래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부정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정순태, 2012).

Estevadeordal(2000)에 의해서 최초로 계량적 분석된 엄격성 지수는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의 난이도를 1에서 7까지의 지수로 표현했다. Suominen and Estevadeordal (2004)에서 엄격성에 관한 연구가 확대되었으며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보완하고 수정하며 관련 연구가 활발히 발전되고 있다. Estevadeordal 은 NAFTA에서 채택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분석하여 원산지 결정 기준의 엄격성을 범주화 하였다. 엄격성 지수가

높을수록 엄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엄격성 지수가 높으면 FTA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FTA의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여 생산자가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품의 원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특정 품목의 경우 생산 공정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 추가적 비용의 발생은 수출업자와 생산자, 공급자가 FTA의 활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김세영·조국형, 2012).

<표 2> Estevadeordal 의 엄격성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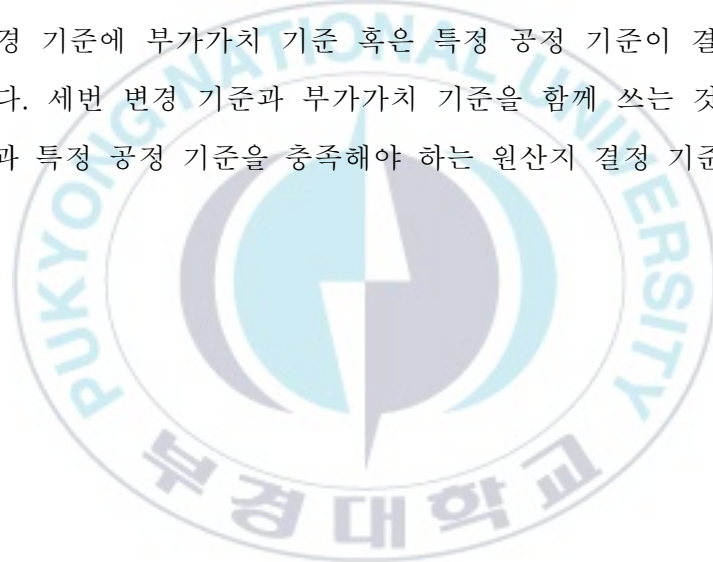
지수	엄격성 지수 요건
1	$y \leq CI$ (HS 8단위~10단위 변경)
2	$CI < y \leq CTS$ (지수 1보다 엄격하고, HS 6단위 변경)
3	$CTS < y \leq CTS \& RVC$ (지수 2보다 엄격하되, HS 6단위 변경 & 부가가치 기준)
4	$CTS \& RVC < y \leq CTH, RVC \leq 50\%$ (지수 3보다 엄격하되, HS 4단위 변경, 부가가치 기준 50% 이하)
5	$CTH < y \leq CTH \& RVC, RVC > 50\%$ (지수 4보다 엄격하되, HS 4단위 변경&역내부가가치, 부가가치 기준 50% 초과)
6	$CTH \& RVC < y \leq CC$ (지수 5보다 엄격하되, HS 2단위 변경)
7	$CC < y \leq CC \& TECH \text{ or } WO$ (지수 6보다 엄격하되, HS 2단위 변경&특정 공정 또는 완전 생산 기준)

출처 : Estevadeordal(2000); Suominen and Estevadeordal (2004) 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는 엄격성 지수의 요건과 해당 지수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엄격성 지수1은 HS 6단위 이상인 HS 8단위~10단위 변경이 원산지 결정

기준일 때 해당된다. 엄격성 지수2는 엄격성 지수1 보다는 엄격하며 HS 6단위 변경일 때 해당된다. 엄격성 지수3은 HS 6단위 변경과 부가가치 기준이 함께 적용될 때(CTSH & RVC) 해당된다. 엄격성 지수4는 HS 4단위 변경에 해당하며 부가가치 기준이 50%이하일 때 적용된다. 엄격성 지수5는 HS 4단위 변경과 역내 부가가치 기준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엄격성 지수6은 지수 5보다 엄격하고 HS 2단위 변경이다. 엄격성 지수7은 HS 2단위 변경과 가공 공정 기준이 함께 적용되거나 완전 생산 기준일 때 해당되며 가장 엄격하다.

세번 변경 기준에 부가가치 기준 혹은 특정 공정 기준이 결합될 때 더 엄격해 진다.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함께 쓰는 것 보다 세번 변경 기준과 특정 공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더 엄격하다.



4. 한미 FTA 섬유 원산지 결정 기준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공정별로 다양하다.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주요 쟁점은 방사, 방출, 제직의 구체적인 정의와 원산지를 재단 및 봉제, 직물의 염색 및 날염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할지의 여부이다(류병운, 2006). 섬유·의류 산업은 미국의 민감한 산업 중 하나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FTA를 체결할 때마다 “원사 기준(Yarn-Forward Rule)”을 적용해 왔다. 이 기준은 NAFTA를 비롯하여 미국이 FTA를 체결한 상대국에게 고수하는 원칙이다. 정치적 동기를 이유로 요르단, 이스라엘과의 FTA에서는 원사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지만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워 대부분의 FTA에 원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미 FTA도 당초 우리나라 섬유 업계의 요구 사항이었던 직물 기준(Fabric-Forward Rule)은 배제 되고 대신 원사 기준이 채택 되었다.

<그림 1> 섬유·의류 제조 공정별 원산지 인정 방식



출처 : 이정용·이정희, 2009

원사 기준(Yarn-Forward Rule)은 직물 혹은 의류를 생산할 때 반드시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사(실)를 사용해서 상품을 제직 또는 편직하고 재단·봉제 하여야 원산지를 인정한다. <그림 1>은 섬유·의류 제조 공정별 원산지 인정 방식을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이다. 섬유류는 섬유 원료를 방적해서 원사(yarn), 실을 만들고, 원사를 제직 또는 편직하여 직물(fabric)을 만들며, 직물을 재단·봉제하여 완제품인 의류를 생산한다(Cadot, Melo, Estevadeordal, Suwa-Eisenmann and Tumurchudur, 2002). 원사 기준은 완제품인 의류의 재료가 되는 직물을 만드는 전 단계에 해당된다. 원사, 즉 실을 만드는 단계부터 역내에서 실행해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기준인 것이다. 이러한 엄격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원사 및 직물을 제 3국으로부터 수입해서 가공 처리를 한 후 재수출하는 우리나라 섬유 산업의 생산 구조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준이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전, 기존의 FTA에서 섬유·의류 제품에는 원칙적으로 재단·봉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재단·봉제 기준은 제3국의 실이나 직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했을 때 원산지 기준이 충족 된다. 물론 원사나 직물 생산 단계부터 고유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화학 섬유의 경우 원사 기준에 구애 받지 않는다. 한미FTA 협상 당시의 관건은 주로 제3국(역외국)에서 원사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했던 품목 중 얼마만큼의 예외를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박도준, 2008).

한미 FTA 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원사 기준을 반대하였으며, 국내 섬유 업계의 관심 품목에 원사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리넨 직물, 합섬 여성 재킷 및 합섬 남성 셔츠, 폴리에스테르 섬유, 폴리에스테르 사, 기타 순견직물, 기타 합성섬유, 기타의 직물 및 기타 인조 섬유 장섬유 사, 등의 품목에는 원사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에 대해서는 예외를 확보하였다. 이 예외 품목의

미국 수출 금액은 2003년 ~ 2005년 평균 약 1.35억 달러로 당시 전체 미국 수출의 약 5%에 달하는 높은 금액이었다. 한미 FTA 협상 당시 섬유류 수출 품목 중에서 원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원사 기준 충족이 어려운 33개 품목(HS 10단위)에 대해서만 그 예외를 확보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200여개의 품목에 원사 기준 예외를 요청하였으나 이 33개 품목들로 만족해야 했다(이정용·이정희, 2009).

한미 FTA에서 섬유류는 일반적인 섬유류 품목(50류 ~ 63류) 외에도 기타 품목들 (4202.12, 4202.22, 4202.32, 4202.92, 7019호와 9404.90호)을 포함하고 있다. 예외가 적용되는 33개의 품목이외에 기존의 원사 기준을 완화시킨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가방류를 들 수 있다. 가방류에 속하는 HS 420212호, 420222호, 420232호, 420292호 품목은 원사 기준이 아닌 재단·편직·봉제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인정받고 있다. 또 원사 기준 예외 품목이라고 분류된 린넨 직물·여성 재킷·남성 셔츠 등의 제품의 경우 단일 실질 변형기준(Single Substantive Transformation Criteria)¹⁾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섬유류의 원사 기준이 원사 이후의 공정이 모두 협정 양 당사국에서 이루어져야만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에 반해, 단일 실질 변형 기준으로 재단·봉제 기준은 재단과 봉제의 공정만 발생하면 역내산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인정한다.

린넨 직물(HS 5311)의 경우 제직 기준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인정받기로 하였다. 편직제 여성 재킷(HS 610433, 610439)에서 양모, 면으로 된 것을 제외한 제품은 재단·편직 및 봉제 기준이 충족되면 특혜 관세를 적용 받을

1) 실질적 변형은 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서 기존의 원료가 지니고 있던 그 특유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해 새로운 명칭 혹은 특성을 가진 제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단일 실질 변형 기준은 실질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이 생산의 여러 단계에서 발생하지 않아도 원산지 기준에서의 특정 공정이 그 제품의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다.

수 있다. 직물제 남성용 인조 섬유 셔츠(HS 620530)에는 모달 원사(HS 5510)에서만 외국산 원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역내에서 원사 공급이 어려운 비스코스레이온 단섬유·장섬유사(HS 5403.10, 5403.31, 5403.32, 5403.41), 리오셀(HS 5504), 아크릴 단섬유(HS 5503.30)도 역외 조달로 확보 하였다. 레이온, 라이오셀 등의 섬유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의 제조 및 생산 과정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섬유 소재다. 협상 초기에 원사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안한 248개 품목(HS 8단위)과 완화된 원산지 결정 기준 적용을 확보했다. 폴리에스터 섬유, 폴리에스터사, 기타 순견 직물, 기타 합성 섬유 등이 포함된다.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협정문에서 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한미 FTA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한 이전의 FTA 협정에는 이처럼 섬유류를 위한 원산지 결정 기준만 따로 분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었다. 미국은 섬유 산업이 민감한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해 별도의 장을 만들어 규정했다. 한미 FTA 부속서 4-가에는 섬유와 관련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와 원산지 관련 사항, 세관 협력,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의 내용이 있다.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제50류 내지 제63류)”은 특정 품목(부록4-나-1)의 원산지 규정을 완화해 주는 조건이다. 특정 품목의 수입 상품으로 제 50류 ~ 63류 사이의 상품을 생산한 경우, 특정 품목(부록-4-나-1)과 원산지 기준에 해당되는 섬유 또는사를 혼합하여 생산한 제50류 ~ 63류 사이의 제품을 만든 경우 5년간, 매년 1억 SME(Square Meter Equivalent)²⁾를 국내산으로 인정한다.

미국은 대부분의 FTA 상대국에게 일정 기간 동안 역외국의 원사 및 원

2) 섬유·의류 제품의 계산 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단위이다.

단을 사용하여 완성한 의류 제품에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TPL(Tariff Preference Level)제도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미-모로코 FTA, 미-바레인 FTA, 미-싱가포르 FTA, 미-호주 FTA 등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강준하, 2008). 우리나라도 협상 끝에 공급이 부족한 원료의 경우에는 역외 조달을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에서는 TPL 이라는 용어 대신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 원료·원사 및 원단(Fibers, Yarns, and Fabrics not available in commercial quantiti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최대 1억 SME(Square Meter Equivalent)까지는 역외 조달을 통한 원료를 사용하여도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다. 한미 FTA에서 규정된 물량이 직물과 의류 각각 1억 SME 인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많은 이득을 볼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한미 FTA의 TPL은 미국이 기존의 다른 FTA에서 규정하였던 것과는 다른데,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원료의 공급 부족을 상대국에게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속서 4-나 제1항에는 “수입 당사국이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에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수입 당사국은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가 공급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섬유원료 · 원사 또는 원단이 상업적인 물량으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이용가능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실체도 그 요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록 4-나-1의 자국의 목록에 그 섬유 원료 · 원사 또는 원단을 추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때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는 특정 원료·원사·원단의 공급이 부족해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수입국에게 제공하고, 수입국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공급 부족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이해관계에는 협정 당사국,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 구

매자, 혹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잠재적, 실제적 공급자를 가리킨다(강준하, 2008). 예외적인 규정이어서 만약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입국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물량의 3배까지 공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FTA 발효 후 5년간 적용할 수 있으나 양국의 협상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의류(61류, 62류)의 특정 품목 기준을 완화시키는 조건 규정도 있다. “재단하거나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되거나 이 두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봉제 또는 달리 결합” 하여 완성한 의류는 겹감 원단(칼라 및 커프스 제외)이 협정문 부록 4-나-1에 나와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 특정 품목(부록 4-나-1)의 원단이나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된 구성 요소, 또는 부속서 상에서의 원산지 상품인 하나 이상의 원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된 구성 요소의 혼합물의 경우에는 최소 허용 조항이 적용된다. 섬유 또는 원사를 중량으로 7%까지 허용하며 탄성사는 협정 당사국의 원산지여야 한다. 위와 같이 특정 원단의 중량 비율까지 명확한 숫자로 규정되어 있고, 특정 HS CODE를 명시하는 점을 통해서 제62류가 다른 품목보다 더 엄격함을 알 수 있다.

FTA 관련 섬유 산업의 선행 연구들은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분석하여 보다 높은 특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주로 연구되어 왔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을 구했다(고중현·김주남, 2009; 김정희, 2016; 이석동·이춘수, 2016; 임목삼, 2013; 조정란·정인교, 2008; 하주영·이현옥·구양숙, 2015).

섬유류 수출 촉진을 위한 한미 FTA 활용 방안에 원산지 특례 기준 활용이 있다. 원산지 특례 기준에 해당되는 누적조항과 미소 기준이 FTA를 활용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섬유류 생산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개선도 수출 촉진에 도움이 되는데, 연례 정보 제공이 여러 측면에서 수출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섬유류 생산 시설에 대한 연례 정보

제공은 한미 FTA 협정문 제 4.3조 제 2항에서 정한 세관 협력 의무중 하나이다. 이는 섬유류 제품 통관 시 미국 수입자가 일정한 번호 체계에 따라 생성하여 제출하는 수출업자(제조사) 식별 코드와 함께 미국 측에서 원산지 검증을 상당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검증 장치이다(이석동·이춘수, 2016).

이 두 가지 정보를 활용하면 역외국(제 3국)으로의 물품 우회 수입 혹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을 쉽게 식별해 낼 수 있다. 섬유류 생산 시설 정보 제공은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미국·싱가포르 FTA 제 5.6조 정보공유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이다. 세관 협력의 의무인 섬유류 생산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은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의 0.2%, 대미 수출 금액의 2%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한국 섬유류 수출에 지나친 세관 협력이다(김정희, 2016).

우리나라는 수출량을 최대한 늘려야 안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FTA를 적극적으로 늘려왔다. FTA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FTA는 우리나라 섬유 기업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문 일수도, 전 세계의 섬유 기업과 무한 경쟁을 시작하는 입구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섬유 기업들이 저 관세로 외국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면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이고, 많은 판매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의 FTA로 섬유류가 최대 수혜 산업으로 꼽히고 있어, 우리나라만의 개성 있는 디자인을 연구하고 고품질 상품을 개발한다면 섬유 산업은 더 큰 발전과 해외로의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 FTA에 대응하는 섬유 산업의 전략적 핵심은 품질 경쟁력, 경륜과 노하우의 공격적인 활용, 한류의 적극적 활용을 들 수 있다(김정희, 2016).

하주영·이현옥·구양숙(2015)에 따르면 한미 FTA를 인식하는 우리나라

섬유 기업들의 태도는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FTA로 인한 효과가 있다, 없다, 한미 FTA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 이다. 관세 인하에 따른 매출 증대와 미국 구매자들의 수요 증가로 직접적인 한미 FTA 효과를 경험한 섬유 기업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없다.’와 ‘FTA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에서 공통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미국 봉제 기지의 동남아 이전과 국내 생산 기지의 동남아 이전이다. 국내 원단보다 저렴한 중국과 동남아 원단을 선호하는 미국 구매자들로 인해 중국, 동남아와 비교 하였을 때 경쟁력이 부족하였다(Gereffi, 1999; Gereffi, 2001). 관세 인하로 인한 섬유 기업의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완성된 제품에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도 그 혜택은 구매자나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 실질적으로 생산 업체가 입는 혜택은 미미했다. 한미 FTA 특혜 관세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미국 직수출 품목이 극소량이었다.

FTA의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 당사국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그 중 하나에 CEO 및 직원의 FTA 필요성 인식 저조와 FTA C/O(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FTA 특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거래 업체 간 상호 협조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이상옥·성남길, 2011). 또한 품목 분류 및 협정 별 원산지 결정 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며 원산지 관리 전문 인력의 채용 지원보다 FTA 산업별 전문가 집단이 직접 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Mattoo and Subramanian 2003).

Ⅲ. 우리나라 섬유 산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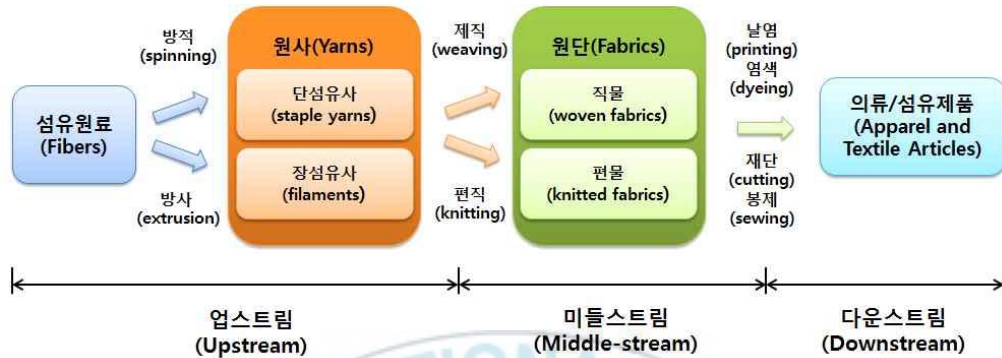
1. 섬유산업의 구조 및 현황

섬유 산업은 원사(Yarn), 직물(Fabric), 편물(Knit), 의류 등의 섬유류를 제조하고 생산하며 그것을 판매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원사와 직물, 염색 가공, 패션 의류 등 업 스트림에서 미들 스트림을 거쳐 다운 스트림에 이르기 까지 고른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기술도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의류의 경우 중·저가의 제품보다 고부가가치를 함유하고 있는 기능성 섬유와 친환경 섬유에 치중되어 있다. 산업용 섬유 등 신섬유 개발 및 생산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http://www.kofoti.or.kr/>).

업 스트림(원료, 섬유 사) - 미들 스트림(직물, 염색·가공) - 다운 스트림(의류, 기타 섬유 제품)에 이르기까지의 단계가 세분화 되어 있는 생산 공정(스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 스트림은 원사와 직물 및 편직물을 생산한다. 미들 스트림은 생산된 직물 및 각종 원료를 의류 또는 패션 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의류 제품을 생산한다. 다운 스트림은 의류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획과 유통, 물류를 담당하는 의류업과 유통업체가 된다. 제품의 종류와 소재, 가공법이 다양하여 제품의 기획과 생산, 유통까지 모든 세부 산업들이 업종별로 상호 연관되어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생산 공정(스트림)별 분포되어 있는 기업의 형태는 공정 과정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부가가치의 비율이 생산 규모에 비례하는 업 스트림에는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섬유 산업의 생산 공정 흐름도



출처 : 이연정·김대근·윤성민(2017)

노동 집약적 공정이 이루어지는 다운 스트림과 미들스트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섬유 산업의 생산 공정을 나타낸 것이다.

국내의 섬유 산업은 생산 공정을 따라서 각 단계마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세 단계로 구분되는 생산 공정은 가치 사슬(Value-Chain)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균형 있게 발전해 왔다. 그러나 생산 공정이 세분화되어 기술 개발이 공정마다 다르고, 이로 인해 섬유 산업 전체의 기술 향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스트림 간의 연계와 상호 협력이 부족하여 국내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균형 있는 스트림 간의 협력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7년에는 섬유 스트림 간 협력 기술 개발 사업에 312억 원을 지원했으나 2018년을 끝으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에서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원사 기준(Yarn-Forward Rule)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스트림 간의 연계와 상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스트림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미 FTA의 시너지 효과

를 위해서는 스트림 간의 협력 기술 개발 사업을 확대 및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김창봉·권승하(2008)와 장인표·김규창(2000)은 섬유 산업의 특징으로 섬유 산업에 내재되어 있는 변동성과 지식 집약적인 면을 들었다. 의류 또는 패션 제품은 유행성, 계절성이 강해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다. 또 소비자의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개인의 성향에 맞춰지기 때문에 소비자 지향적 산업이라 할 수 있다(Martin, 2007). 이러한 섬유 산업의 특징 때문에 제품의 수요가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 소비자의 욕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소재와 창의적인 디자인, 합리적인 경영 전략 등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 지식 집약적 산업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은 원자재의 1/3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든 후 그 완제품의 2/3를 수출하는 해외 의존적인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이다(김성철, 2010; 장덕성, 2006). 섬유 산업은 원료(천연 섬유, 화학 섬유), 원사(방적업, 화섬업), 원단(직물업, 편직업), 염색, 의류(패션, 봉제, 산업용 섬유), 제조, 유통으로 이어지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 창출 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공 산업이다.

섬유 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섬유 패션 산업 업체수가 15년 기준 48,375개로 제조업 내에서 11.7%의 비중을 차지하며, 고용인원은 30만6천명으로 7.6%의 점유율을 보인다. 특히 섬유와 연관된 산업, 즉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섬유, 의류, 신발 도소매업, 염료, 안료 도매업, 섬유 기계업,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 제품 수리업, 세탁업을 포함한 전체 섬유 패션 산업의 업체 수는 304,543개, 고용인원은 86만 4천명인 것을 통해 섬유 산업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한국 섬유산업연합회, <http://www.kofoti.or.kr/>).

<표 3> 섬유산업 동향

(단위 : 천 톤, 백만 불)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생산량	1,813	1,824	1,951	2,105	2,116	2,073	1,957	1,892	1,886
내수량	714	742	785	774	808	831	753	754	739
수출액	13,317	11,634	13,899	15,932	15,696	16,072	16,096	14,490	13,807
수입액	8,800	7,407	9,924	12,628	11,730	13,281	14,396	14,305	14,507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³⁾

<표 3>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섬유류 생산량과 내수량, 수출액과 수입액을 정리한 것이다. 생산량과 비교하였을 때 내수량은 절반 정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은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띄고 있는 형태여서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기 때문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생산량이 최고점을 기록하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내수량은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다. 수출액은 점차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 다시 감소하였지만 수입액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 섬유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생산량과 내수량의 통계는 섬유 사(면사, 모사, 화섬사)의 물량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섬유와 직물, 의류를 포함한 전체적인 섬유류의 동향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수출액과 수입액은 섬유류(원사, 직물, 섬유 제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우리나라 섬유류 수출입 동향과 전체 생산량에서 내수량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3) 섬유 산업의 생산 및 내수 지표는 원사(대기업), 직물(중소기업), 의류(중소기업) 등의 48,375개(전국 사업체조사, 2015년 기준, 1인 이상 사업체)로 전수 조사를 할 수 없어 면사, 모사, 화섬사의 생산 실적만 조사. 의류·패션 등의 경우 물량을 기준으로 추산할 수 없어 제외함.

2. 섬유류 수출입 통계

최근 11년간의 섬유류 수출입 실적은 <표 4>와 같다. 2007년에서 2008년으로 올라가면서 수출이 증가하다 2009년에 감소한다. 이는 미국의 금융 시장 위기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국제 교역 및 생산이 감소하여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전체 수출에서 섬유류 비중이 약 3%인 것이 2017년에는 약 2.4%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수입의 경우, 2010년에 섬유류 비중이 약 2.3%에서 2016년에는 약 3.6%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역 수지도 2010년 섬유류의 비중이 10.3%에 달하던 것이 2015년에 이르러는 0.2%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통계 수치를 통해서 최근 몇 년간의 섬유류 수출이 점차 줄어드는데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섬유류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 불, 전년 대비 %)

연도	수출		수입		무역 수지	
	전체	섬유류	전체	섬유류	전체	섬유류
2007	371,489	13,446	356,846	8,909	14,643	4,537
2008	422,007	13,317	435,275	8,800	13,267	4,517
2009	363,534	11,634	323,085	7,407	40,449	4,227
2010	466,384	13,899	425,212	9,924	41,172	3,975
2011	555,214	15,932	524,413	12,628	30,801	3,304
2012	548,076	15,595	519,582	11,987	28,494	3,608
2013	559,632	15,955	515,586	13,520	44,047	2,434
2014	572,665	15,936	525,515	14,658	47,150	1,279
2015	526,757	14,304	436,499	14,461	90,258	186
2016	495,426	13,807	406,193	14,507	89,233	700
2017	573,694	13,742	478,478	15,194	95,216	1,452

출처 : 섬유패션산업통계(2018)

2007년 146억 달러였던 무역수지는 증가하고 있다. 2010년 411억 달러였던 무역수지는 2012년에 284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했다. 유로존의 부채 위기의 악화와 미국의 재정 악화까지 겹치는 등 글로벌 경제 위기가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무역수지는 악화되었지만 2012년에 섬유류는 1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3년부터 섬유류의 비중은 급격히 떨어져 2015년에 이르러서는 0.2%에 불과하다. <표 4>를 통해서 섬유류 수출은 2013년부터 감소하였으나 수입의 경우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국가별 섬유류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불, 천 톤, 전년 대비 %)

순위	국가	2016		2017		증감률		비중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1	베트남	2,844	333	2,980	348	4.8	4.5	21.7	12.1
2	중국	2,124	332	1,968	326	7.4	1.7	14.3	11.4
3	미국	1,323	297	1,273	287	3.8	3.5	9.3	10.0
4	인도네시아	1,136	161	1,105	156	2.7	3.5	8.0	5.4
5	일본	827	128	773	132	6.5	3.0	5.6	4.6
6	홍콩	463	58	443	49	4.4	16.2	3.2	1.7
7	터키	269	74	370	104	37.4	40.8	2.7	3.6

출처 : 섬유패션산업통계(2018)

2016년과 2017년에 우리나라의 섬유류 수출 상위 7개 국가는 <표 5>와 같다. 그중에서도 상위 4개 국가인 베트남,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의 금액과 물량이 하위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위의 인도네시아와 1위 베트남에 수출 하는 섬유류의 금액은 각각 11억 달러와 28억 달러로 2배가 넘는 정도로 상위 국가들에 수출하는 섬유류의 물량과 금액의 폭이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예전부터 섬유류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왔다. 한미FTA 이후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미

국으로의 수출을 늘린 것도 미국이 우리나라 섬유류 수출 실적 3위에 해당하는 이유라고 파악된다. 이처럼 <표 5>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섬유류가 베트남, 중국,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대부분 수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국가별 섬유류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불, 천 톤, 전년 대비 %)

순위	국가	2016		2017		증감률		비중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1	중국	6,210	1,049	6,181	1,051	0.5	0.1	40.7	49.9
2	베트남	3,080	317	3,597	377	16.8	18.9	23.7	17.9
3	인도네시아	760	128	803	119	5.6	6.9	5.3	5.7
4	이탈리아	646	10	722	10	11.7	1.6	4.8	0.5
5	일본	546	82	522	89	4.5	8.2	3.4	4.2
6	인도	372	105	381	97	2.3	8.3	2.5	4.6
7	미국	380	43	359	43	5.5	1.4	2.4	2.0

출처 : 섬유패션산업통계(2018)

<표 6>은 우리나라 섬유류의 주요 수출 상위 7개국을 나타낸 것이다. <표 5>에서 상위 7개국에 해당되었던 수출 국가들이 대부분 겹친다는 점을 통해 우리나라가 활발히 섬유류를 수출하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공급이 계속 이어진다고 판단된다. K-POP을 비롯한 한류의 열풍과 선진국과도 밀리지 않는 고품질의 제품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해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한 것이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일본 같이 특히나 한국과 지리상 밀접하게 자리 잡은 국가들에게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표 7> 세계 섬유·의류 수출

(단위 : 백만 불, 전년 대비 %)

No.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증감률	2016 비중
	세계	698,060	755,087	794,737	744,122	726,302	2.4	100.0
1	중국	255,253	284,154	298,425	283,635	262,924	7.3	36.2
2	인도	29,276	32,959	36,082	35,543	34,177	3.8	4.7
3	이태리	35,333	37,209	39,135	32,994	33,425	1.3	4.6
4	베트남	18,337	21,761	25,504	27,576	30,756	11.5	4.2
5	독일	32,005	33,554	35,258	30,209	30,655	1.5	4.2
6	방글라 데시	21,226	25,152	26,945	28,229	30,424	7.8	4.2
7	터키	25,344	27,542	29,184	26,073	25,960	0.4	3.6
8	홍콩	33,119	32,636	30,295	27,523	23,589	14.3	3.2
9	미국	19,086	19,795	20,463	20,055	18,552	7.5	2.6
10	스페인	13,986	15,934	17,066	15,683	16,954	8.1	2.3
11	프랑스	15,693	16,558	17,303	15,453	15,567	0.7	2.1
12	벨기에	13,861	14,735	15,301	13,924	14,397	3.4	2.0
13	네덜 란드	12,955	13,846	14,718	12,635	13,156	4.1	1.8
14	파키 스탄	12,919	13,890	14,068	13,255	12,783	3.6	1.8
15	한국	13,880	14,143	14,157	12,763	12,092	5.3	1.7

출처 : 섬유패션산업통계(2018)

<표 7>은 전 세계 섬유·의류 수출 상위 15개국을 나타냈다. 한국은 2016년 기준 15위의 섬유 수출 국가이다. 2014년 까지 수출 금액이 141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 127억 달러, 2016년에는 120억 달러로 감소하고 있다. 미국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2014년 이후로 차츰 수출 금액이 떨어져 2016년에는 185억 달러로 2.6%의 세계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단연 1위의 중국은 전 세계 섬유·의류 수출의 36.2%를 차지한다. 이는 2위의 인도와 약 9배나 더 많은 비중으로 시중에서 파는 옷의 100개 중 30개는 중국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위 수출

국에는 인도가 해당된다. 섬유 산업 인프라(INFRA) 투자가 진행되어 세계 2위의 섬유류 수출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표 8> 세계 섬유·의류 수입

(단위 : 백만 불, 전년 대비 %)

No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증감률	2016 비중
	세계	740,533	804,055	844,198	781,839	770,110	1.5	100.0
1	미국	113,919	117,990	121,460	126,459	119,953	5.1	15.6
2	독일	47,054	49,693	52,606	47,236	47,728	1.0	6.2
3	일본	42,985	42,378	40,037	36,759	36,080	1.8	4.7
4	프랑스	29,561	31,077	33,283	29,769	29,714	0.2	3.9
5	영국	29,642	30,389	31,972	30,166	28,991	3.9	3.8
6	이태리	23,844	24,339	26,211	23,114	23,334	1.0	3.0
7	중국	24,335	26,902	26,418	25,544	23,125	9.5	3.0
8	스페인	18,623	19,314	21,896	20,634	22,140	7.3	2.9
9	홍콩	26,702	26,858	25,531	23,423	20,627	11.9	2.7
10	네덜 란드	15,980	16,690	19,061	17,002	17,220	1.3	2.2
11	캐나다	13,955	14,511	14,667	14,284	13,885	2.8	1.8
12	베트남	9,694	11,349	12,867	13,667	13,848	1.3	1.8
13	한국	11,149	12,753	13,838	13,684	13,752	0.5	1.8
14	벨기에	12,835	13,352	14,164	11,611	12,314	6.1	1.6
15	폴란드	7,985	8,513	10,142	9,777	10,580	8.2	1.4

출처 : 섬유패션산업통계(2018)

세계 섬유·의류의 수입 통계는 <표 8>와 같이 나타난다. 미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1위이다. 우리나라는 섬유·의류 수입 13위 국가로서 2016년 기준 전 세계에서 1.8%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세계 섬유·의류 수출에서 독보적 1위였던 중국은 7위에 머물렀으며 수입 금액은 2013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에 전 세계의 수입 금액이 8441억 달러로 가장 높은 금액이며 이후 2015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5년에 있었던 국제 이슈들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여 섬유·의류 수입뿐 아니라 모든 무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IS를 비롯한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테러, 파리 연쇄 테러, 시리아 내전, 난민 사태, 에볼라 바이러스,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셰일 개발에 따른 유가 하락, 아베노믹스,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중단(출구 전략), 유럽의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우려 등 여러 위기가 맞닥처 전 세계 무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태들로 국제 경제가 악화되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교역량이 감소하여 섬유의 교역량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섬유·의류 수출 통계에서는 상위권에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수입의 경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가 상위 5위에 있다. 이는 유럽 섬유 산업의 생산 방식 중 하나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값싼 아시아의 원재료를 수입,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원인에 해당된다.

<표 9> 미국 섬유류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 불, 전년 대비 %)

HS CODE	수출 실적				수입 실적			
	2016	증감률	2017	증감률	2016	증감률	2017	증감률
50	10	22.6	13	33.1	99	14.8	81	18.1
51	67	22.7	75	12.5	265	17.4	266	0.6
52	5,678	3.5	7636	34.5	934	11.6	901	3.5
53	19	13.2	20	3.9	218	9.4	216	0.8
54	1,714	4.1	1,776	3.6	2,077	10.4	2,070	0.3
55	2,239	9.1	2,161	3.5	1,655	13.1	1,631	1.4
56	2,266	3.1	2,406	6.1	2,045	2.7	2,099	2.7
57	972	5.6	998	2.7	2,666	5.8	2,769	3.9
58	467	5.3	491	5.2	725	6.3	725	0.0
59	2,196	2.0	2,292	4.4	2,460	1.9	2,567	4.3
60	955	9.9	882	7.6	1,061	1.6	992	6.5
61	2,600	4.5	2,671	2.7	43,981	6.2	44,250	0.6

62	2,324	9.6	2,283	1.8	37,380	4.7	36,604	2.1
63	1,996	8.4	2,131	6.8	13,963	1.6	14,732	5.5
합계	12,503	5.6	25,836	9.9	109,529	4.9	109,904	0.3

출처 : 섬유패션산업통계(2018)

<표 9>는 미국의 섬유류 수출입 실적을 HS CODE 별로 구분하여 2016년과 2017년의 금액을 정리한 것이다. 수출에서는 52류 ‘면’이 2016년 56억 달러, 2017년 76억 달러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가장 많은 수출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입에서는 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2016년과 2017년 각각 439억 달러와 442억 달러로 명실상부한 1위의 수입 실적을 보였다. 두 HS CODE의 수출 및 수입 실적은 2위와 많은 금액의 차이를 보인다. 수출에서 2위의 실적은 61류로 2016년에 26억 달러를, 2017년에는 26.7억 달러의 수출을 하였다. 수입 실적의 경우 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이 2번째로 많은 성과를 보였다.

이는 곧, 섬유류 제품에서 의류(61류와 62류)의 수입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52류)의 수출은 2016년에 전년 대비 3.5% 증가를 보인데 있어 2017년에는 34.5%나 증가하여 수출·수입을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다. 미국에서 섬유류 제품의 수입이 수출에 비해 현저히 많으며, 2016년 약 8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던 것이 1년 후 수출이 2배로 늘어 수입과의 비율이 1:4.25 가 된 것이 <표 9>에 나타난다.

IV. 실증분석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관세청 무역 통계의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실적 자료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는 섬유류의 6단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각 품목의 기간, 품목명, 품목코드, 국가명, 수출 중량, 수입 중량, 수출 금액, 수입 금액, 무역 수지가 데이터에 나타나 있다. 자료의 단위는 금액은 천 달러(USD 1,000), 중량은 톤(TON) 단위이다. 본 연구에서 한미 FTA 섬유류에 포함 시킨 품목에는 일반적으로 섬유류에 속하는 HS CODE 50류 ~ 63류,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포함되는 제42류 여행가방의 4202.12호, 4202.22호, 4202.32호, 4202.92호와 제70류 유리 섬유 로빙 및 사의 7019호, 제94류 이불류에 해당되는 9404.90호까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미 FTA로 인한 우리나라 섬유 교역량 및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FTA 발효 전 후의 섬유 교역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섬유 교역에 있어 한미 FTA 이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후 1년 동안의 데이터와 전후 3년 동안의 섬유 교역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한미 FTA 전후의 섬유 교역 데이터를 독립 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여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다. 여기에 사용될 데이터는 한미 FTA 발효 전후 동일하게 교역이 발생한 품목들만을 포함시켰다.

첫째, 한미 FTA 발효 이후 가장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1년 동안의 섬유 교역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1년에서 2013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교역이 진행되었던 품목들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섬유 교역에서 수출과 수입에서의 품목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전체 데이터에서 수출 금액과 수입 금액이 0으로 나타난 품목들은 제외하였다.

둘째, 한미 FTA가 발효되고 3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섬유 교역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FTA 발효 전(2009년, 2010년, 2011년)의 3년과 발효 후의 3년(2013년, 2014년, 2015년)을 분석하였다.

셋째, 한미 FTA 전후 1년과 전후 3년 동안 동일하게 교역이 진행되었던 섬유류 품목들이 ‘섬유 산업의 스트림 단계 및 섬유 재료의 유형에 의한 HS 품목 분류’ 중 어느 제품군에 속하는지를 각각 분석하였다.

넷째, 한미 FTA 전후 1년과 전후 3년 동안의 섬유류 교역에서 한미 FTA 이후 새롭게 교역이 발생한 품목들은 ‘섬유 산업의 스트림 단계 및 섬유 재료의 유형에 의한 HS 품목 분류’ 중 어느 제품군에 속하는지를 각각 분석하였다.

다섯째, 한미 FTA 발효 이전의 기준 세율에 따른 섬유류 교역량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한미 FTA 발효 이후 섬유류의 품목 별 양허 유형에 따른 섬유류 교역을 분석하였다.

2. 실증분석 결과

가. 한미 FTA 전후 1년 섬유 교역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동일 품목)

한미 FTA 전후 1년 동안의 섬유류 교역 품목을 대상으로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한미 FTA가 발효된 것은 2012년 3월 15일이기 때문에 2012년 3월 14일까지는 FTA 이전이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2011년)과 이후(2013년)로 구분 하였다. 2011년과 2013년에 동일하게 교역이 이루어진 품목들을 한정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역이 꾸준히 이어진 동일 품목 내에서도 수출 금액과 수입 금액이 각각 0으로 나타난 품목들은 제거하여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을 구분 지었다.

<표 10>과 <표 11>은 한미 FTA 전후 1년 동안 꾸준히 교역이 이루어졌던 섬유류의 수출 품목, 수입 품목을 각각 독립 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2012년을 전후로 하여 2011년을 집단1, 2013년을 집단2로 정의하였다. <표 10>의 수출 품목에서 총 470개의 섬유류 품목이 꾸준히 교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섬유류의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 어느 것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t값을 통해서 한미 FTA 발효 후 섬유류 교역량이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값이 마이너스가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한미 FTA 이후 수출 중량과 수출 금액이 증가 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한미 FTA로 인한 수출 증가는 있었으나 그 증가 폭이 예상

보다 높지 않았으리라 판단된다.

<표 11>은 수입 품목의 한미 FTA 전후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총 506개의 섬유류 품목이 2011년부터 꾸준히 교역 대상에 포함되었다. <표 10>의 수출 품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수출 증가를 보였다면, <표 11>의 수입 품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중량, 수입 금액 모두 2011년과 비교하였을 때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여 우리나라의 섬유류 무역 수지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전후 동일하게 교역이 이루어진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섬유류 동일 품목들이 아닌 품목들을 대상으로 다시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해 보았다. 결과는 <표 10>, <표 11>과 마찬가지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이전 207개의 품목이 수출 품목에 해당되었다면 발효 후 229개로 22개의 품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수입 품목도 마찬가지로, 171개의 품목에서 193개가 되어 품목이 다양해진 것을 확인하였다. 통계적으로는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미 FTA 이후 섬유류 수출 중량과 수출 금액이 늘어나 무역 수지도 증가하였다. 수입 품목의 경우는 수입 중량과 수입 금액이 한미 FTA 발효 전에 비해 감소하여 무역수지가 증가하였다.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동안 발생한 교역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의 변화는 없었고, 새로이 교역이 발생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한미 FTA 전후 1년 수출 품목)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통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수출 중량	등분산이 가정됨	.149	.700	-.235	938	.814	-65.7387234	279.2961381	-613.8563524	482.3789056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35	894.448	.814	-65.7387234	279.2961381	-613.8908358	482.4133890
수출 금액	등분산이 가정됨	.161	.689	-.340	938	.734	-269.704	792.908	-1825.782	1286.37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40	936.795	.734	-269.704	792.908	-1825.785	1286.377
무역수지	등분산이 가정됨	.055	.814	-.505	938	.613	-408.549	808.252	-1994.740	1177.64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05	937.813	.613	-408.549	808.252	-1994.741	1177.643

<표 11>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한미 FTA 전후 1년 수입 품목)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 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수입증량	등분산이 가정됨	.085	.771	.157	1010	.875	42.8448617	272.6827639	-492.2447627	577.934486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57	967.799	.875	42.8448617	272.6827639	-492.2727580	577.9624813
수입금액	등분산이 가정됨	1.146	.285	.594	1010	.553	533.988	898.897	-1229.931	2297.90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94	730.366	.553	533.988	898.897	-1230.741	2298.717
무역수지	등분산이 가정됨	.005	.942	-.662	1010	.508	-771.984	1166.970	-3061.948	1517.97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662	894.668	.508	-771.984	1166.970	-3062.302	1518.334

나. 한미 FTA 전후 3년 섬유 교역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동일 품목)

한미 FTA가 발효되고 1년 동안의 섬유 교역 비교만 가지고 한미 FTA의 효과를 말하기에는 부족하여 3년 동안의 섬유류 교역 데이터를 가지고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2>와 <표 13>은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간의 섬유류 교역 데이터를 수출 품목, 수입 품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한 것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 이전 3년(2009년, 2010년, 2011년)과 이후 3년(2013년, 2014년, 2015년)을 집단으로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의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은 결국,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이나 발효된 이후나 교역량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 품목에 한정 지어 분석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예외로 분류하고 있던 섬유류 품목별 데이터들을 한미 FTA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해보았다. 하지만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교역이 이루어졌던 품목과 교역이 발생했다가 없어졌던 품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들을 총합하여 볼 때 한미 FTA가 발효되고 우리나라 섬유류 교역에 있어 품목의 다변화는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교역량에 커다란 차이는 없다. 한미 FTA 협상 시 수출 호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높았던 것에 비해 실제 교역에서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한미 FTA 전후 3년 수출 품목)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 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수출중량	등분산이 가정됨	.265	.607	-.310	2368	.757	-69.1568776	223.4275710	-507.2908130	368.977057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10	2321.289	.757	-69.1568776	223.4275710	-507.2953216	368.9815663
수출금액	등분산이 가정됨	2.515	.113	-1.040	2368	.298	-533.386	512.738	-1538.847	472.07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040	2327.033	.298	-533.386	512.738	-1538.856	472.084
무역수지	등분산이 가정됨	1.943	.163	-.931	2368	.352	-480.778	516.349	-1493.321	531.76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931	2331.592	.352	-480.778	516.349	-1493.329	531.773

<표 13>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한미 FTA 전후 3년 수입 품목)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차	차이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차이의 하한	상한
수입중량	등분산이 가정됨	.718	.397	-.444	2506	.657	-92.9977671	209.2788460	-503.3749732	317.379438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44	2231.803	.657	-92.9977671	209.2788460	-503.3993375	317.4038032
수입금액	등분산이 가정됨	.095	.757	-.215	2506	.830	-106.479	496.156	-1079.396	866.438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15	2497.542	.830	-106.479	496.156	-1079.398	866.439
무역수지	등분산이 가정됨	.993	.319	-.567	2506	.570	-391.294	689.594	-1743.527	960.938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67	2502.723	.570	-391.294	689.594	-1743.527	960.939

다. 섬유류 품목 분류 결과

한미 FTA 전후 1년과 3년 동안 교역이 이루어진 품목을 대상으로 섬유 제품 품목 분류를 실시하였다. 섬유 산업의 스트림 단계 및 섬유 재료의 유형에 의한 HS 품목 분류(한국무역협회, 2013)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3>은 그 단계를 보여준다. 한미 FTA에서 섬유류에 해당되는 품목은 HS CODE 50류 ~ 63류 이외에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포함되는 제42류 여행가방의 4202.12호, 4202.22호, 4202.32호, 4202.92호와 제70류 유리 섬유 로빙 및 사의 7019호, 제94류 이불류에 해당되는 9404.90호까지이다. <그림 3>에 나타나 있는 원료, 섬유, 사(원사 : Yarn), 직물, 특수직물, 편물, 의류, 섬유제품과 여행가방류, 유리 섬유, 이불류를 포함하여 11가지로 섬유류 품목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 섬유 산업의 스트림 단계 및 섬유 재료의 유형에 의한 HS 품목 분류

원료	섬유	사	직물, 부직포, 특수직물			제품	
			직물	특수 직물	편물	의류	섬유 제품
누에고치, 생사 5001~5003		5004~5006	5007	56류 ~ 59류	60류	편물 61류	63류
양모, 동물성 섬유	5101~5105	5106~5110	5111~5113			편물 이외 62류	
면(Cotton)	5201~5203	5204~5207	5208~5212				
식물성 섬유	5301~5305	5306~5308	5309~5311				
고분자 중합체 (39류)		5401~5406	5407~5408				
고분자 중합체 (39류)	5501~5507	5508~5511	5512~5516				

출처 : 한국무역협회(2013)

<표 14>는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동안 꾸준히 교역이 이루어진 품목들을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으로 분류하고, 그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을 ‘섬유산업의 스트림 단계 및 섬유 재료의 유형에 의한 HS 품목분류’를 사용하여 모두 분류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수출 품목은 470개, 수입 품목은 506개인 것을 통해 섬유류 수입에 더 다양한 섬유류 품목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섬유 원료에 대한 교역이 수출 품목에는 없었으나 수입 품목에는 포함되는 것을 <표 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출, 수입에서 의류가 각각 177개로 37.6%, 201개로 39.7%에 해당되어 전체 섬유류 교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교역을 보인 것은 수출 품목의 경우 직물이 97개로 20.6%, 수입 품목은 특수 직물이 93개로 18.4%를 차지하였다.

<표 14>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섬유류 동일 품목 분류

수출 품목 분류		수입 품목 분류	
사	42	사	42
섬유	8	섬유	9
섬유제품	33	섬유제품	46
여행가방류	4	여행가방류	4
원료	-	원료	1
유리섬유	8	유리섬유	11
의류	177	의류	201
직물	97	직물	83
이불류	1	이불류	1
특수직물	70	특수직물	93
편물	30	편물	15
총계	470	총계	506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동안 섬유류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의 교역에서는 의류가 제일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진 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 품목에는 없었던 원료가 수입 품목에서 나타나는 것을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두 번째로 교역이 많이 나타난 품목에 수출 품목은 직물이, 수입 품목은 특수 직물로 나타났다. 특수직물은 HS CODE 56류 ~ 59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타 방직용 섬유 재료에 해당된다. 제56류는 워딩 펠트, 부직포이며 제57류는 양탄자이다. 제58류는 특수직물 레이스, 자수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9류는 침투·도포직물에 해당된다.

<표 15>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수출 예외 품목 분류

2011		2013	
사	12	사	16
섬유	2	섬유	2
섬유제품	8	섬유제품	4
유리섬유	1	유리섬유	2
의류	5	의류	20
직물	16	직물	22
특수직물	11	특수직물	9
편물	4	편물	3
총계	59	총계	78

<표 15>와 <표 16>은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동안의 섬유 교역에서 꾸준히 교역이 이루어진 품목이 아닌, 예외 품목으로 구분한 것이다. 2011년에는 교역이 있었으나 2013년에는 교역이 되지 않은 품목, 혹은 그 반대에 해당되는 품목들을 각각 섬유류의 수출 품목, 수입 품목으로 분류하였다.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의 교역은 섬유류 분류를 통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수출 예외 품목 분류인 <표 15>에는 유리섬유에 해당되는 품목의 교역이 나타나지만, <표 16>의 수입 예외 품목 분류에서는 유리섬유의 교역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에서 모두 직물의 교역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에 섬유류 수출 품목의 26.7%를, 2013년에는 27.8%가 교역이 이루어졌

으며, 수입 품목에서는 2011년 30.3%, 2013년 38.0%가 식물 품목에서 교역이 이루어졌다.

<표 16>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수입 예외 품목 분류

2011		2013	
사	14	사	12
섬유	3	섬유	7
섬유제품	3	섬유제품	3
원료	-	원료	1
의류	7	의류	6
식물	17	식물	27
특수식물	6	특수식물	7
편물	5	편물	7
총계	55	총계	70

또한 <표 16>의 수입 예외 품목 분류에서 원료에 해당되는 섬유류 품목이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새롭게 나타났다. 이것은 <표 15>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교역의 양상으로 섬유류의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이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은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동안 꾸준히 교역이 이루어졌던 품목을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으로 구분한 것이다. 수출 품목은 395개로 나타났고 수입 품목은 418개 품목이다. 이것은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동안의 수출·수입 품목이 각각 470개, 506개였던 것에 비해 수출에서 75개의 품목과 수입에서 88개의 품목이 줄어들었다. 원료(누에고치, 생사)에 대한 교역은 사라졌지만 그 외의 품목에서는 교역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을 <표 1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인 교역의 양상도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동안의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의 교역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의류가 섬유류 전체에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두 번째로 높은

교역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수출 품목은 직물이 83개로 21.5%, 수입 품목은 특수 직물의 품목이 18.9%로 교역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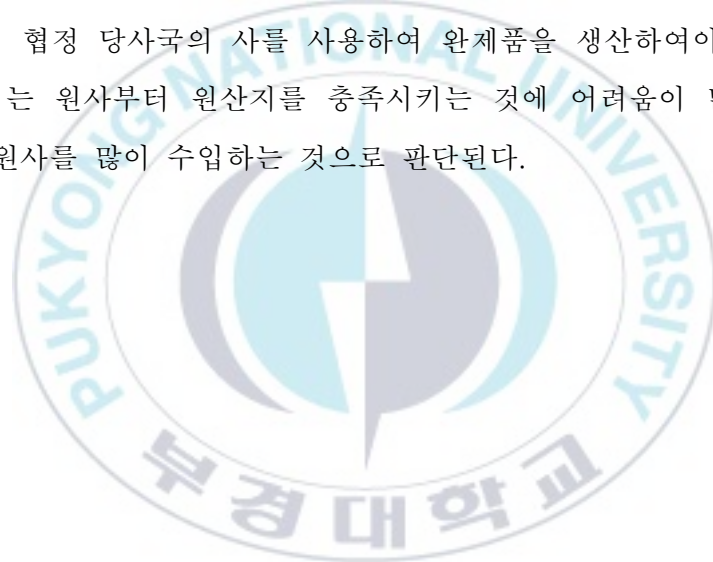
<표 17>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동일 품목 분류

수출 품목 분류		수입 품목 분류	
사	31	사	24
섬유	4	섬유	9
섬유제품	22	섬유제품	39
여행가방류	4	여행가방류	4
유리섬유	5	유리섬유	11
의류	161	의류	183
직물	83	직물	55
이불류	1	이불류	1
특수직물	58	특수직물	79
편물	26	편물	13
총계	395	총계	418

<표 18>과 <표 19>는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동안의 수출 예외 품목과 수입 예외 품목을 분류한 것이다. 섬유류의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 모두 직물에 해당되는 품목들의 교역이 가장 많았다. 이는 2009년에서 2015년까지 꾸준히 교역이 있었던 품목들의 경우 의류가 가장 높았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인데, 동일 품목의 경우 의류의 교역이 가장 많고 직물이 두 번째로 교역이 많이 되는 품목이었기 때문이다. <표 18>의 수출 품목에서 유리 섬유에 대한 교역이 꾸준히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지만, <표 19>의 수입 품목에서는 유리 섬유에 대한 교역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섬유 원료의 교역이 2011년부터 새롭게 나타났는데, 한미 FTA에서 적용하고 있는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원사 기준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원사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섬유의 원료(누에고치, 생사)를 수입하여 원사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직물을

생산하여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 품목에서 직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다. 2013년 섬유류 수출에서 의류와 직물의 품목 수가 같았던 것을 제외하면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가장 교역이 활발했던 품목이다.

두 번째로 교역이 활발했던 섬유류 품목은 수출에서는 의류였다. 2011년에 원사의 교역이 증가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주력 섬유류 수출 품목은 의류라는 것을 <표 18>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수입 품목은 의류가 2014년, 2015년에 들어서 의류의 교역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그 이전에는 원사의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원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사에서부터 협정 당사국의사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사부터 원산지를 충족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사를 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8> 한미 FTA 전후 3년 수출 예외 품목 분류

2009		2010		2011		2013		2014		2015	
사	16	사	21	사	23	사	27	사	25	사	21
섬유	5	섬유	10	섬유	6	섬유	6	섬유	9	섬유	9
섬유제품	11	섬유제품	17	섬유제품	19	섬유제품	15	섬유제품	19	섬유제품	16
유리섬유	4	유리섬유	5	유리섬유	4	유리섬유	5	유리섬유	5	유리섬유	3
의류	30	의류	25	의류	21	의류	36	의류	33	의류	33
직물	40	직물	39	직물	30	직물	36	직물	35	직물	39
특수직물	24	특수직물	24	특수직물	23	특수직물	21	특수직물	21	특수직물	25
편물	3	편물	5	편물	8	편물	7	편물	8	편물	9
총계	133	총계	146	총계	134	총계	153	총계	155	총계	155

<표 19> 한미 FTA 전후 3년 수입 예외 품목 분류

2009		2010		2011		2013		2014		2015	
사	29	사	29	사	32	사	30	사	25	사	24
섬유	10	섬유	3	섬유	3	섬유	7	섬유	11	섬유	13
섬유제품	6	섬유제품	9	섬유제품	10	섬유제품	10	섬유제품	10	섬유제품	7
원료	-	원료	-	원료	1	원료	2	원료	2	원료	1
의류	15	의류	20	의류	25	의류	24	의류	29	의류	26
직물	39	직물	49	직물	45	직물	55	직물	52	직물	49
특수직물	20	특수직물	18	특수직물	20	특수직물	21	특수직물	19	특수직물	20
편물	8	편물	6	편물	7	편물	9	편물	8	편물	12
총계	127	총계	134	총계	143	총계	158	총계	156	총계	152

라. 섬유류 총계 분석 결과

<표 20>은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동안 동일하게 교역이 발생하였던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의 총계를 나타낸 것으로 해당 년도에 교역이 이루어진 섬유류의 수출 중량, 수입 중량, 수출 금액, 수입 금액, 무역 수지를 나타낸 표이다. 금액 단위는 천 불(USD 1,000), 중량은 톤(TON)으로 되어 있다. <표 20>과 <표 21>은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동안의 섬유류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의 총계를 각각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교역이 이루어졌던 동일 품목, 교역이 일정하지 않았던 예외 품목으로 나누어서 나타낸 것이다.

<표 20>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동일 품목 총계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수출 중량	수입 중량	수출 금액	수입 금액	무역수지
2011 수출	219,756.5	35,291	1,312,497	375,993	936,490
2011 수입	205,827.1	151,997.2	1,232,656	838,973	393,674
2013 수출	250,653.7	33,084.4	1,439,258	310,743	1,128,508
2013 수입	232,560.5	130,317.7	1,353,076	568,775	784,298

교역이 꾸준히 있었던 품목들의 경우 한미 FTA 이후 수출이 늘어 무역수지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입 품목에서는 전체적인 수입이 2011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3년부터 줄어들어 무역수지가 높아진 것을 <표 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1>의 총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섬유류 수입 품목의 수입이 줄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증가하였다. 수출 품목의 수출도 늘었지만 수입도 함께 증가하여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22>는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동안의 섬유류 교역에서 2009년부

터 2015년까지 꾸준히 교역이 되었던 수출 품목의 총계를 나타내었고, <표 23>은 섬유류의 수입 품목 총계이다.

<표 21> 한미 FTA 전후 1년 예외 품목 총계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수출 중량	수입 중량	수출 금액	수입 금액	무역수지
2011 수출	555.2	1,084.8	4,869	6,009	-1,141
2011 수입	6,481.7	435.2	31,370	3,555	27,811
2013 수출	697.2	11,416.4	7,809	73,204	-65,395
2013 수입	6,163.7	151.3	36,473	1,173	35,302

<표 22>의 수출 품목 총계를 보면 수출 금액이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한다. 수출 중량은 한미 FTA 발효 전년도인 2011년에 급격히 감소하나 다시 증가한다. 이러한 통계로 미루어 중량 대비 단가가 높은 상품들의 교역보다는, 품목의 중량이 많이 나가는데 비해 금액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저부가가치의 제품 위주로 교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한미 FTA 전후 3년 동일 수출 품목 총계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수출 중량	수입 중량	수출 금액	수입 금액	무역수지
2009	245,930.2	12,402.9	1,066,349	170,992	895,364
2010	250,759.3	14,795.4	1,179,185	255,221	923,968
2011	217,800.7	17,668.9	1,303,886	291,107	1,012,769
2013	248,485.6	17,980	1,424,820	255,064	1,169,753
2014	265,600.5	18,518.4	1,412,884	264,042	1,148,852
2015	282,355	20,870.3	1,343,778	260,561	1,083,218

<표 23>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출 중량과 수출 금액이다. 수입 품목에 해당되는 섬유류지만 전체적인 금액에서 보면 오히려 수출을 더 많

이 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 3년 전에 해당되는 2009년의 무역수지는 590,454천 불이었다. 2010년, 2011년으로 해가 더해가면서 전체적인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수입 또한 높은 증가를 보여 무역수지가 점차 하락했다.

<표 23> 한미 FTA 전후 3년 동일 수입 품목 총계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수출 중량	수입 중량	수출 금액	수입 금액	무역수지
2009	207,964	101,485.4	930,687	340,238	590,454
2010	210,100.9	116,772.4	1,012,462	532,853	479,611
2011	183,586.8	151,879.3	1,140,687	836,850	303,827
2013	212,909.4	130,172.1	1,272,242	566,679	705,553
2014	224,481.3	150,341	1,251,478	623,070	628,431
2015	240,652	206,243.2	1,184,305	653,717	530,591

한미 FTA 발효 직후, 2013년의 무역수지는 한미 FTA가 발효되기 직전 해인 2011년의 무역수지(303,827천 불)의 2배가 넘는다. 수입은 줄어들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섬유류의 수입 품목에서 한미 FTA의 효과를 보듯 싶었으나,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표 24>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예외 수출 품목 총계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수출 중량	수입 중량	수출 금액	수입 금액	무역수지
2009	6,918.9	6,398.8	19,348	38,788	-19,444
2010	4,545	85,020	20,574	186,136	-165,566
2011	2,511	18,706.9	13,480	90,895	-77,420
2013	2,865.3	26,520.8	22,247	128,883	-106,640
2014	2,504.8	124,888.8	21,400	342,872	-321,467
2015	3,429.4	171,829.4	22,822	324,215	-301,397

한미 FTA 발효 2년차, 3년차에 해당되는 2014년과 2015년도의 무역수지가 다시 감소하는 것을 <표 23>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 금액은 2011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까지 수입이 감소하다가 2015년에 들면서 수입 금액과 중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나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수입보다는 수출을 많이 하였다.

<표 24>와 <표 25>는 한미 FTA 발효 전후3년 동안 교역하고 있던 품목에서 교역이 꾸준히 성사되지 않고 불규칙하게 이루어졌던 품목들을 각각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으로 구분한 것이다. 여기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은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의 교역이 반대라는 것이다. 수출 품목의 수출 금액 보다 수입 금액이 더 높아 무역 수지가 2015년에는 그 금액의 차이가 11배가 되어 -301,397천 불로 엄청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 품목도 수입 금액보다 수출 금액이 약 3배 이상 훨씬 높다.

<표 25>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예외 수입 품목 총계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수출 중량	수입 중량	수출 금액	수입 금액	무역수지
2009	38,680.4	451.5	123,634	4,538	119,106
2010	32,260.4	830.6	142,769	6,554	136,219
2011	28,722	553.1	123,339	5,678	117,658
2013	25,814.8	296.9	117,307	3,269	114,047
2014	23,328.2	339.1	84,362	2,867	81,500
2015	39,710.7	741.1	157,943	5,464	152,485

<표 25>에서 무역수지는 2013년 114,047천 불에서 1년 만에 81,500천 불로 줄어든다. 다음해인 2015년에 152,485천 불로 약 2배가량 무역수지가 증가하였는데, 2015년은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 섬유류 양허 유형의 3년 균등 철폐가 시작되는 년도이다. 3년 균등 철폐에 속해 있던 섬유류 품목이 2015년에 관세가 철폐되면서 무역수지가 흑자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마. 추가 분석 결과 - 기준 세율

한미 FTA가 발효되기 이전, 섬유류 품목에는 9가지의 기준 세율이 있었다. 1%, 2%, 4%, 7.5%, 8%, 10%, 13%, 51% or 5,276/kg, 51.7% or 17,215/kg 이다. 이중에서도 기준 세율이 다른 세율과 달리 특이하게 나타난 51% or 5,276/kg, 51.7% or 17,215/kg은 각각 HS CODE 500100호의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와 500200호의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로 섬유류 품목 분류에서도 원료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이 두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은 전혀 없으며 수입만 하고 있다. HS CODE 500100호 같은 경우는 교역이 아예 발생하고 있지 않은 품목이며 500200호는 미국에서 수입만 하고 있는 상태다.

<표 26>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의 기준 세율

	수출		수입	
	기준 세율	품목 수	기준 세율	품목 수
기준 세율	-	-	1%	2
	2%	1	2%	2
	7.5%	1	7.5%	1
	8%	157	8%	165
	10%	109	10%	98
	13%	201	13%	237
총계		469		505

섬유류의 기준 세율은 9가지가 있지만 약 96%의 품목이 기준 세율 8%, 10%, 13%에 해당된다. <표 26>은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2011년과 2013년) 동안 교역이 이루어진 섬유류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의 기준 세율 별 품목 수를 분석한 것이다. 8%, 10%, 13%에 해당되는 품목의 교역량이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수출·수입 품목이 동일하게 기준 세율이 13%인 섬유류 품목의 교역이 가장 많고, 그 뒤를 8%, 10%의 세율에 해당되는

품목의 교역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수출 품목에서 기준 세율 7.5%에 해당 되는 품목은 HS CODE 550200호 이다. 이 품목은 원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섬유’에 해당되며 고분자 중합체에 속하는 산업용 섬유이다. 이 품목에 대한 교역이 증가하는 것은 한미 FTA의 원사 기준의 충족과 산업용 섬유를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판단된다.

<표 27>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의 기준 세율

	수출		수입	
기준 세율	-	-	1%	2
	-	-	2%	1
	-	-	7.5%	1
	8%	130	8%	133
	10%	92	10%	77
	13%	172	13%	203
총계		394		417

특이한 점은 95%이상의 품목이 기준 세율 8%, 10%, 13%에 해당되는 것과는 별개로 교역량이 많은 품목을 살펴보면 품목 수가 몇 안 되는 기준 세율 1%, 2%, 7.5%에 해당되는 품목이라는 것이다. 기준 세율 1%의 HS CODE 520100호와 520300호, 기준 세율이 2%에 해당되는 HS CODE 500300호와 550510호, 그리고 7.5%의 HS CODE 550200호까지 공통적으로 수입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모두 ‘섬유’에 해당되는 품목인 것을 통해 ‘섬유’의 수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7>은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2009년 ~ 2015년) 동안 교역이 꾸준히 이루어진 섬유류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의 기준 세율 별 품목 수를 분석한 것이다. 수입 품목의 경우 <표 26>과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수출 품목에서는 기준 세율이 2%인 HS CODE 550510호 합성섬유의 것, 7.5%의 HS CODE 550200호 재생·반 합성 필라멘트 토우(Tow)의 교역이

사라진 것이 보인다. HS CODE 500300호의 교역이 사라졌지만 이 품목의 경우 이전에도 거의 교역량이 없어 전체적인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28>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예외 품목의 기준 세율

	수출		수입	
	기준 세율	품목 수	기준 세율	품목 수
기준 세율	4%	1	2%	1
	8%	23	8%	21
	10%	21	10%	22
	13%	14	13%	11
총계		59		55

<표 28>은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의 섬유류 예외 품목을 기준 세율로 분석한 것이다. 수출 품목에서는 기준 세율 8%에 해당되는 품목의 교역이 가장 많았다면, 수입 품목에서는 10%에 해당되는 품목의 교역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수출 품목에서 기준 세율 4%의 HS CODE 550410 호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의 교역이 1개가 있었다. ‘섬유’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만 하던 품목이다.

<표 29>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예외 수출 품목의 기준 세율

	2009		2010		2011	
	기준 세율	품목 수	기준 세율	품목 수	기준 세율	품목 수
기준 세율	-	-	1%	2	2%	1
	-	-	2%	1	4%	1
	7.5%	1	4%	1	7.5%	1
	8%	40	8%	52	8%	50
	10%	42	10%	42	10%	38
	13%	50	13%	48	13%	43
총계		133		146		134

수입에서는 2%의 HS CODE 550520호 재생·반합성 섬유류의 것의 교역이 있었는데, 550410호와 마찬가지로 ‘섬유’에 해당되는 품목이지만 수입만 하고 있는 품목이다.

<표 29>와 <표 30>은 한미 FTA 전후 3년 동안의 섬유류 교역에서 FTA가 발효되기 이전에 수출입 되던 품목을 분석한 것이다. 수출 품목의 경우 2010년에 교역이 이루어진 품목 개수가 146개로 전년도 대비 13개의 품목이 증가하였으나 2011년, 다시 감소하였다. 이와 반대로 섬유류 수입 품목의 경우 2009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0>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예외 수입 품목의 기준 세율

	2009		2010		2011	
기준 세율	1%	2	4%	1	2%	2
	8%	56	8%	50	8%	53
	10%	36	10%	43	10%	43
	13%	33	13%	40	13%	45
총계		127		134		143

한미 FTA 전후 3년 예외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기준 세율이 8% 미만인 것은 모두 ‘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수입만 하고 있으며 규모가 매우 커서 섬유류 교역에서 무역 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포함된다.

바. 추가 분석 결과 - 양허 유형

대부분의 품목이 8%, 10%, 13%에 해당하지만 ‘섬유’에 해당하는 몇 가지 품목의 경우 1%, 2%, 7.5%의 세율에 해당되며 수입량이 다른 품목에 비해 아주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이들 품목의 교역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한미 FTA에서 대한민국 양허 표를 살펴보면 다양한 양허 유형으로 각 품목을 규정하였다. 섬유류의 경우 즉시 철폐, 3년 균등 철폐, 5년 균등 철폐로 3가지의 양허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체 섬유류 품목의 95% 이상이 즉시 철폐로 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5%가 3년 균등 철폐와 5년 균등 철폐로 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3년 균등 철폐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가 가장 적다.

<표 31>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3년의 동일 품목 양허 유형

	1년 수출	1년 수입	3년 수출	3년 수입
즉시 철폐	445	482	377	397
3년 균등 철폐	16	8	3	8
5년 균등 철폐	8	15	14	12
총계	469	505	394	417

<표 31>은 각각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과 3년 동안의 섬유류 교역 품목에서도 꾸준히 교역이 발생했던 품목을 구분해 양허 유형으로 분석한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즉시 철폐에 해당하는 품목이 전체 섬유류에서 95%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표 31>에서도 약 95%의 품목의 양허 유형이 즉시 철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 품목의 경우 2013년의 교역 품목의 특징으로 3년 균등 철폐에 해당되는 품목의 교역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고 3년이 되던 2015년의 교역

에서는 5년 균등 철폐에 해당되는 품목이 더 많았다. 이와 달리 수입 품목에서는 5년 균등 철폐의 품목이 더 다양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허 유형별 분석에서 즉시 철폐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는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실제 교역량은 다르게 나타났다. 3년 균등 철폐에 해당되던 품목의 수입이 가장 높았고 5년 균등 철폐의 품목의 수출이 많았다. 수입에서 3년 균등 철폐의 품목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무역수지가 적자로 향하는 데 한 몫을 하였다. 수출에서는 5년 균등 철폐 품목의 교역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 FTA 이전의 기준 세율이 양허 유형과 관련이 있는지 비교 하였으나 기준 세율과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2>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예외 품목의 양허 유형

	수출	수입
즉시 철폐	77	69
5년 균등 철폐	1	1
총계	78	70

<표 32>는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동안 이루어진 섬유류 교역에서 불규칙하게 교역이 이루어진 품목들을 양허 유형으로 구분해 보았다. 두 가지 양허 유형만이 나타나고 있으며 98% 이상이 즉시 철폐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준다. 즉시 철폐의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아 통계 분석이 어려워 단순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표 33>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예외 수출 품목의 양허 유형

	2013	2014	2015
즉시 철폐	145	146	151
3년 균등 철폐	5	5	2
5년 균등 철폐	3	4	2
총계	153	155	155

<표 33>에서는 발생하던 3년 균등 철폐의 섬유류 교역이 <표 34>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3년 균등 철폐에 해당되는 품목의 교역은 수입 품목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무역수지는 5년 균등 철폐가 가장 높고 3년 균등 철폐의 무역수지가 항상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균등 철폐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입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5년 균등 철폐의 품목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양이 많아 무역수지가 상대적으로 흑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표 34>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예외 수입 품목의 양허 유형

	2013	2014	2015
즉시 철폐	154	153	145
5년 균등 철폐	4	3	7
총계	158	156	152

V. 결론

1. 실증분석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한미 FTA 전후 섬유류 교역 분석을 통하여 한미 FTA가 우리나라 섬유류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한미 FTA 전후 1년과 3년 동안의 섬유 교역을 대상으로 한미 FTA 전후 교역량의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섬유류 교역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들을 섬유 제품 품목 분류를 통하여 11가지로 구분한 후 어떤 품목에서 교역이 활발한지도 확인해 보았다. 섬유류 교역 데이터의 수출 중량, 수입 중량, 수출 금액, 수입 금액, 무역수지의 총계를 통해서 해당 년도의 섬유류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의 교역 변화도 살펴보았다. 또 추가 분석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의 섬유류 품목의 기준 세율 별 해당 품목 수를 분석하였다. 추가 분석으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섬유류 품목에 규정된 양허 유형을 통한 교역 분석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높은 FTA 활용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 한미 FTA 전후의 섬유 교역량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전후 1년 동안(2011년과 2013년)의 섬유 교역에 있어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FTA가 발효되고 1년 뒤의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파악하기 위해 발효 전후 3년 동안의 섬유 교역 데이터도 사용하였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한미 FTA 발효 전후 3년 동안의 섬유 교역량 데이터도 실증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미 FTA로 인

한 전체 교역량의 변화는 없었다.

둘째, 한미 FTA 전후 1년, 전후 3년 동안의 섬유 교역 대상을 섬유 제품 품목 분류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의류와 직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섬유류의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에서 교역량이 가장 높은 것은 의류였다. 우리나라의 의류 수출도 상당하지만 그만큼 많은 의류를 수입하고 있다. 특수직물과 원사도 높은 교역량을 보였다. 특수 직물의 경우 섬유류 HS CODE 제56류 ~ 59류를 모두 포함한다. 기타 방직용 섬유 재료로 구분 가능한 품목이기도 한데 워딩 펠트, 부직포, 양탄자, 특수직물 레이스, 자수포, 침투·도포직물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특수 직물로 구분하고 있는 품목 중 일부는 산업용 섬유로 구분되는 품목도 있다. 이를 통해 산업용 섬유의 교역이 높으며 특히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섬유류 품목 중 하나라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원사의 수입도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한미 FTA 섬유류 원산지 결정 기준이 원사 기준인 것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공급할 수 있는 원사의 비중은 높지 않은데,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원사가 필요하여 원사를 대량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미 FTA 전후 섬유 교역 데이터의 총계를 분석함으로써 해당연도의 전체적인 교역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섬유류 교역은 한미 FTA 발효 후 1년 동안은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감소해 무역수지가 증가하였다. 수출 품목의 수출이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를 보였다. 수입은 2013년에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5년의 무역수지를 보면 2011년과 무역수지가 거의 변화 없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입 품목의 수입은 2014년까지 감소하다 2015년에 급증하였다. 수출은 한미 FTA 발효 후 1년인 2013년 까지 감소하다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한미 FTA 발효 후 새롭게 교역에 포함되었던 수출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

섬유류의 수출보다 미국 제품의 수입이 약 10배 정도 높아서 엄청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수입 품목의 경우 한미 FTA 이후 급감을 보였으나 2015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계속 감소하다가 2015년에 급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한미 FTA 발효 이후 섬유류 수출이 잠시 증가하였으나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감소하였고, 섬유류 수입에서도 2013년에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 들어서 다시 예전의 교역량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무역수지의 변화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하였다.

넷째, 추가 분석으로 실시한 섬유류 품목의 기준 세율 별 품목 수와 전체 교역량을 분석을 통해 한미 FTA가 발효되기 이전, 발생했던 섬유류 교역에 대해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섬유류의 기준 세율은 9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최소 세율 1%에서 최대 세율 13%까지가 존재하였다. 대부분의 섬유류 품목은 기준 세율 8%, 10%, 13%에 해당된다. 품목 분류에서 '섬유'에 해당하는 품목 중 일부는 기준 세율 1%, 2%, 7.5% 등 8% 미만의 세율에 해당되며, 수입 금액이 높아 무역수지 적자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추가 분석으로 실시한 양허 유형 별 섬유류 품목 분석으로 섬유류에는 즉시 철폐, 3년 균등 철폐, 5년 균등 철폐로 3가지의 유형이 있고, 그 중 즉시 철폐의 품목이 약 95%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즉시 철폐에 해당되는 품목이 많은 것과는 별개로 수출 측면에서는 5년 균등 철폐에 해당되는 품목이, 수입 측면에서는 3년 균등 철폐에 해당되는 섬유류 품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섬유류 품목의 기준 세율과 양허 유형의 관계에 따른 것인지 분석하였으나,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허 유형의 구분에서도 9가지의 기준 세율이 골고루 섞여 있어 특별히 나타나는 점은 없었다.

2. 연구의 시사점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 FTA 섬유류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많지만 대부분 한미 FTA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인 원사 기준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많은 연구들이 원사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우리나라 섬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실제 교역량을 가지고 한미 FTA 전후 교역 분석을 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전후 3년까지의 섬유류 교역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고, 한미 FTA로 인한 전체적인 교역량의 변화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TA 발효 직후의 섬유류 총계를 보면, 2013년까지 수출의 증가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예전의 형태로 돌아갔다. 그러므로 한미 FTA 전후의 섬유 교역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둘째, 한미 FTA로 인한 전체적인 교역량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교역 품목의 변화는 존재하였다. 한미 FTA로 인한 교역 금액의 증가는 없었으나 교역 대상이 되는 섬유류 품목의 다변화로 FTA 발효 전후 교역량을 분석하였을 때, 품목수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섬유류 품목 중에서 의류와 직물로 분류되는 품목의 교역이 활발했고, 원사의 수입이 증가했다. 이는, 원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사를 수입하여 직물 혹은 의류를 가공·생산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원인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섬유류의 품목 분류를 통한 한미 FTA 전후 교역 분석을 실시해 교역 패턴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셋째, 한미 FTA에서 섬유류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적용하는 원사기준

충족이 어려워 협상 초기 전망하던 수혜 품목으로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섬유류 품목의 70% 이상이 엄격성 6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품목도 엄격성 4와 7에 해당되는 만큼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원사기준 충족의 복잡함이 우리나라 섬유 수출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원사 기준 충족의 어려움이 섬유류 교역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넷째, 본 연구는 한미 FTA 전후의 섬유류 교역 데이터를 기준 세율과 양허 유형으로 분석함으로써 전체 교역량에서 이들이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한미 FTA 이전의 교역에서는 '섬유'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 중에서 기준 세율이 8% 미만의 품목 수입이 매우 높았다. 양허 유형에서는 즉시 철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에 비해 수출 금액, 수입 금액에서 5년 균등 철폐와 3년 균등 철폐의 품목이 높았다. 그러므로 한미 FTA 협상 당시 실제 섬유류 교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FTA를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세율과는 상관없이 우리나라 섬유 산업에서 민감한 품목 혹은 수출·수입률이 높은 품목이 3년 균등 철폐와 5년 균등 철폐 유형이기 때문이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 FTA로 인한 우리나라 섬유류 교역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데이터로 다른 변수들의 개입이 최소화 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에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꾸준히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해 왔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 3년 이후의 데이터에 한미 FTA 이외의 다른 변수의 개입이 있을 수 있어 2015년까지만 사용하였다. 하지만 양허 유형에서 5년 균등 철폐의 품목에 대한 교역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는 2017년까지의 섬유류 교역 데이터이다. 다른 변수의 개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시도를 통해 섬유류 교역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미 FTA에서 섬유류의 엄격성이 대부분 6으로 나타나 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70% 이상이 엄격성 지수6에 해당되어 다른 집단과의 표본의 차이가 너무 심해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엄격성 지수 4나 지수 7에 해당되는 품목의 교역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섬유류의 엄격성 지수 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없었다. 다른 산업과의 엄격성 지수 비교를 통해서 섬유류의 교역을 분석한다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섬유 제품 품목 분류를 본 연구에서는 11가지로 구분하였으나 나아가 산업용 섬유, 화학 섬유 등 섬유류의 품목 분류를 더 다양하게 하여 교역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HS CODE 6단위로 나타난 섬유류 품목별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위가 HS CODE 6단위까지

이고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미국은 8단위를 사용한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 간의 교역에 있어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교역량의 통계 자료와 실제 교역량에 미세한 차이는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이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중현, 김주남(2009), 한미 FTA에 대비한 미국 섬유시장 진출 전략,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1호, 95-116.
- 강문성(2015), 한중 FTA 원산지 규정의 특징과 엄격성 지수에 대한 연구, 무역연구, 제11권 제3호, 215-232.
- 강준하(2008), 한국-미국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80호, 66-100.
- 권미옥, 나희량(2016), 우리나라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분석: 국가 및 산업별 특성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41권 제3호, 63-107.
- 김성철(2010),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산업내 무역과 시사점,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6호, 3075-3092.
- 김세영, 조국형(2012), FTA 원산지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69-91.
- 김정희(2016), 섬유/의류 산업의 FTA 대응전략 (한-미, 한-중 FTA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8권 제2호, 139-148.
- 김창봉(2008), 섬유산업의 SCM 사업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물류학회지, 제18권 제3호, 5-26.
- 김창봉, 권승하(2008), 섬유산업의 SCM 파트너십 요인과 사업성과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3호, 221-238.
- 류병운(2006), 한국-캐나다 FTA 자동차, 섬유·의류, 개성공단 원산지규정 안 연구: 한·미 FTA 협상의 시사점을 위하여, 통상법률, 제71호, 93-121.
- 박길상(2005), 한국섬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제

9권 제2호, 265-299.

박도준(2008), 한·미 자유무역협정 섬유 및 의류산업 원산지 규정에 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10권 3호, 197-219.

박현희(2012), 한국의 기체결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연구, 무역학회지, 제37권 제2호, 335-357.

손수석(2012), 다자적 세계에서 FTA 원산지규정의 무역제한성 완화에 관한 연구, 관세 학회지, 제13권 제4호, 43-60.

손용정(2017), 한국 기체결 FTA의 활용률과 실용률 분석,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71-91.

이명구, 정재완, 정재호(2016), FTA 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청람.

이상옥, 성남길(2011), 한국섬유업체의 FTA 혜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 한-EU FTA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12권 제2호, 155-174.

이석동, 이춘수(2015),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교역성과에 관한 소고 - 대미 섬유류 수출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제16권 제1호, 107-127.

이석동, 이춘수(2015), 한·미 FTA 섬유류 협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무역학회지, 제40권 제2호, 71-91.

이석동, 이춘수(2016), 대미 섬유류 수출촉진을 위한 한·미 FTA 의 활용 방안,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1호, 139-168.

이연정, 김대근, 윤성민(2017), 국내 섬유산업의 구조변화와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30권 제6호, 1965-1988.

이영달, 이신규(2016),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1호, 27-50.

이용근, 안창달(201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무역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 주요 교역물품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제36권 제5호, 171-196.

이정용, 이정희(2009),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나타난 섬유·의류부문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한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제10권 제4호, 203-222.

임목삼(2013),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미 FTA 활용 섬유(편직물)를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제38권 제5호, 479-497.

장덕성(2006), 한국 섬유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형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 223-235.

장인표, 김규창(2000),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실증적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101-120.

정순태(2012), FTA 특혜원산지규정의 문제점과 조화,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93-110.

정재우, 이길남(2011), 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제13권 3호, 143-166.

조성장, 조찬혁(2016), FTA 산업별 원산지기준과 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2호, 93-108.

조정란, 정인교(2008), 원사기준 원산지기준의 경제효과 추정- 한-캐나다 FTA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제9권 제2호, 167-187.

채형복, 황해륙(2008), 한·미 FTA 원산지규정의 해석상 쟁점, 통상법률, 제83호, 51-92.

하주영, 이현옥, 구양숙(2015), 한·미 FTA에 대한 한국섬유업체의 인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7권 제6호, 978-987.

한국무역협회(2013), 한미 FTA 검증 대응 전략 : 섬유 및 의류산업.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8), 섬유패션산업통계(2018).

허윤석, 박명섭, 박진우(2017),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지수에 관한

- 연구: 수산물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42권 제6호, 155-176.
- Bilkey, W. J., & Nes, E. (1982), Country-of-origin effects on product evalu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3(1), 89-100.
- Brenton, P. (2003), Notes on rules of origin with implications for regional integration in South East Asia,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Management,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World Bank*.
- Brenton, P., & Manchin, M. (2003), Making EU trade agreements work: the role of rules of origin, *The World Economy*, 26(5), 755-769.
- Cadot, O., Estevadeordal, A., & Suwa-Eisenmann, A. (2005), Rules of origin as export subsidies.
- Cadot, O., De Melo, J., Estevadeordal, A., Suwa-Eisenmann, A., & Tumurchudur, B. (2002), *Assessing the Effect of NAFTA's Rules of Origin*, University of Lausanne, Lausanne.
- Duttagupta, R., & Panagariya, A. (2007), Free trade areas and rules of origin: Economics and politics, *Economics & politics*, 19(2), 169-190.
- Erasmus, H., Flatters, F., & Kirk, R. (2006), Rules of origin as tools of development? Some lessons from SADC, *The Origin of Goods: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 Estevadeordal, A. (1999),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NAFTA (No. 2567),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Estevadeordal, A., Harris, J., & Suominen, K. (2009), Multilateralising

-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ound the world, (No. IDB-WP-137), *IDB working paper series*.
- Flatters, F. (2002, September), SADC Rules of Origin: Undermining regional free trade, *In TIPS Forum, Johannesburg*, 9-11.
- Gereffi, G. (1999),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ial upgrading in the apparel commodity chai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8(1), 37-70.
- Gereffi, G. (2001), Global sourcing in the US apparel industry, *Journal of Textile and Apparel, Technology and Management*.
- Hirsch, M. (2002), Rules of Origin as Trade or Foreign Policy Instruments-The European Union Policy on Products Manufactured in the Settlements in the West Bank and the Gaza Strip, *Fordham Int'l LJ*, 26, 572.
- Inama, S. (2009),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mes, W. E. (2006), Rules of origin in emerging Asia-Pacific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Will PTAs promote trade and development, *Asia-Pacific Research and Training Network on Trade Working Paper Series*, 19.
- Ju, J., & Krishna, K. (2005), Firm behaviour and market access in a free trade area with rules of origin,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Revue canadienne d'économie*, 38(1), 290-308.
- Krishna, K. (2005), *Understanding rules of origin* (No. w1115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Krishna, K., & Krueger, A. (1995), *Implementing free trade areas*:

- Rules of origin and hidden protection* (No. w498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Krueger, A. O. (2012), Free trade agreements as protectionist devices: Rules of origin. In *Trade, Theory and Econometrics*, Routledge, 113-124.
- Manchin, M., & Pelkmans-Balaoing, A. O. (2007), *Rules of origin and the web of East Asian free trade agreements* (No. 4273), The World Bank.
- Martin, M. F. (2007, July), US clothing and textile trade with China and the world: Trends since the end of quotas,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Mattoo, A., Roy, D., & Subramanian, A. (2003), The 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and its rules of origin: generosity undermined?, *The World Economy*, 26(6), 829-851.
- Medalla, E. M., & Balboa, J. D. (2009), ASEAN rules of origin: Lessons and recommendations for best practice (No. 2009-36), *PIDS Discussion Paper Series*.
- Palmer, N. D. (1987), Rules of Origin or Rules of Restriction—A Commentary on a New Form of Protectionism. *Fordham Int'l LJ*, 11, 1.
- Suominen, K., & Estevadeordal, A. (2004), Rules of Origin in FTAs in Europe and in the America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EU-Mercosur Inter-Regional Association Agreement (No. 2568),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Vermulst, E. A. (1992), Rules of origin as commercial policy instruments-revisited. *J. World Trade*, 26, 61.

기타 자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의 대한민국의 가입을 위한 의정서

관세청 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

산업 통상 자원 부, <http://www.motie.go.kr/www/main.do>

섬유산업FTA지원센터, <https://www.ftatex.or.kr/tmcis-ptlweb/>

한국섬유산업연합회, <http://www.kofoti.or.kr/>

한미 FTA 협정문

FTA 관세 특례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